

신탁에 대한 과세제도 - 상속형 신탁을 중심으로 -

2020. 10

연구진

연구책임자

권성오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강문정 선임연구원

이화령 연구원

목 차

I. 서론	9
II. 신탁의 기본개념	13
1. 신탁의 정의	13
2. 신탁의 분류	13
3. 신탁과세이론	14
가. 신탁실체이론	14
나. 신탁도관이론	17
4. 우리나라 세법상 이론 적용	19
가. 납세의무자와 이중과세	19
나. 과세대상 소득의 범위	20
다. 신탁소득 구분	20
라. 소득 귀속 시기	20
마. 원천징수 의무자	21
III. 우리나라 신탁제도 및 현황	23
1. 신탁 운영 현황	23
2. 신탁 관련 제도	25
가. 「신탁법」 및 「자본시장법」	25
나.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25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27
3. 우리나라의 상속형 신탁	28
가. 유언신탁	28
나. 유언대용신탁	30
다. 수익자연속신탁	37
4. 우리나라의 유류분제도	45
가. 제도	45
나. 상속형 신탁과 유류분반환청구	47
다. 쟁점사항	48
5. 우리나라 신탁의 과세 현황	51
가. 일반원칙	51
나. 상속 및 증여세	52
다. 위탁자신탁 및 철회가능신탁	53
라. 자산의 상속 및 증여에 따른 소득세	54
마. 유언대용신탁	55
바. 수익자연속신탁 및 세대생략이전과세	56
IV. 주요국의 신탁제도 및 현황	57
1. 영국	57
가. 영국 신탁제도	57
나. 신탁 운영 현황	63
다. 신탁 과세 현황	66
라. 유류분제도	73
2. 미국	74
가. 미국 신탁제도	74

나. 신탕 운영 현황	79
다. 신탕 과세 현황	82
라. 유류분제도	88
3. 일본	90
가. 일본 신탕제도	90
나. 신탕 운영 현황	97
다. 신탕 과세 현황	101
라. 유류분제도	105
V. 국제비교 및 시사점	107
1. 국제비교	107
가. 주요국의 유연대용신탕 및 수익자연속신탕 과세	107
나. 주요국의 수익자연속신탕을 통한 세대생략이전과세제도	108
다. 유류분제도	110
라. 신탕 존속기간	112
2. 시사점	112
가. 상속형 신탕 관련 법 및 과세제도 규정 명확화 필요	112
나. 신탕 존속기간 설정 및 관련 규정 필요	114
다. 유류분제도와 관련한 「신탕법」 수정 필요	114
참고문헌	116

표 목차

〈표 II-1〉 신탁실체이론과 신탁도관이론 비교	22
〈표 III-1〉 신탁 종류별 연도별 신탁 수탁고 추이	24
〈표 III-2〉 신탁 적용 법령	25
〈표 III-3〉 사례 1. 위탁자가 생전수익자이고 자녀가 제1호 사후수익자인 경우	34
〈표 III-4〉 사례 2. 위탁자가 생전수익자이고 자녀가 제2호 사후수익자인 경우	35
〈표 III-5〉 사례 3. 위탁자가 생전수익자이고 자녀가 제2호 사후수익자이지만 신탁 계약 내용에 사후수익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	35
〈표 III-6〉 수익자연속신탁의 가정례	39
〈표 III-7〉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 비율	46
〈표 III-8〉 유류분 침해액 산정방식(「민법」상)	47
〈표 IV-1〉 영국의 과세상 일반신탁의 분류	62
〈표 IV-2〉 신탁소득 구간별 신탁 개수(2013~2018년)	65
〈표 IV-3〉 신탁소득 구간별 신탁소득 합계(2013~2018년)	66
〈표 IV-4〉 미국의 과세상 신탁의 분류	78
〈표 IV-5〉 미국의 신탁 유형별 수탁액(2016년 말 기준)	81
〈표 IV-6〉 일본의 과세상 신탁의 분류	92
〈표 IV-7〉 일본 신탁 종류별·연도별 수탁 현황	99
〈표 IV-8〉 유언 관련 업무 추이	100

〈표 IV-9〉 유연대용신탁 신규 수탁 추이	101
〈표 V-1〉 유연대용신탁 과세제도 비교	108
〈표 V-2〉 수익자연속신탁을 통한 세대생략이전과세 비교	110
〈표 V-3〉 유류분제도 비교	111

그림 목차

[그림 II-1] 신탁의 종류	15
[그림 III-1] 연도별 신탁 수탁고 추이	23
[그림 IV-1] 연도별 신탁 관련 과세소득	63
[그림 IV-2] 영국 신탁 및 부동산 추이(2003~2018년)	64
[그림 IV-3] 연도별 신탁 관련 기관 소득	80
[그림 IV-4] 일본 연도별 신탁 추이	98

I. 서론

- 2012년 「신탁법」이 개정되며 신탁 설정이 가능한 자산의 범위가 확대됨¹⁾
 - 이로 인해 자기신탁,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 재신탁, 수익권의 증권화 신탁사채 발행, 유한책임신탁 등의 제도가 마련되었음

 - 더불어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빨라지면서 자산과 수익에 대한 보호 및 관리, 분쟁 없는 부의 이전 가능성 등으로 인해 점차 신탁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음
 - 치매·장애·미성년 등 스스로 재산을 보호하기 어렵고, 후견인이 있으나 믿을 수 없는 경우, 신탁을 통해 피후견인의 재산을 보호·관리함으로써 재산을 지킬 수 있음
 - 노령 등의 이유로 부동산 임대관리, 금융재산 관리가 어려운 경우 신탁을 통해 자산관리를 대행하는 것도 가능함
 - 주요 재산에 대해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하여 수탁자가 집행자로서 상속재산의 분배를 담당해, 상속인들의 동의 절차 없이 지정한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함으로써 재산 분배에서의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음
 - 신탁을 통해 다양한 방법의 자산승계 설계 및 변화하는 환경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으며, 수익자연속신탁을 통해 자녀세대뿐 아니라 손자세대에 이르기까지 자산승계를 미리 결정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신탁 운영 현황을 보면 2000년도 90.3조원에서 2020년 3월 기준
-
- 1) 2012년 개정 전 「신탁법」은 신탁대상을 '재산권'으로 규정하고 있어 적극재산 외에는 신탁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2012년 「신탁법」 개정을 통하여 일반법상 신탁 관련 규율을 완화하고 신탁재산을 확대(채무 및 담보권 포함)하여 새로운 유형의 신탁을 허용하였음

985.7조원으로, 2000년 대비 약 11배 증가하여, 시간이 흐를수록 신탁 수탁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음²⁾

- 금전신탁 중 퇴직연금신탁의 경우 2010년 18.7조원에서 2020년 3월 158.5조원으로 약 8배 증가하였음
- 재산신탁 중 금전채권은 2010년 51.2조원에서 2020년 3월 191.9조원으로 증가하였음

□ 「신탁법」이 개정되어 새로운 유형의 신탁이 생기고, 신탁 이용 및 수탁 추이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신탁세제 및 제도는 세법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음

- 이로 인해 「신탁법」의 해석에 따라 과세처분이 달라지는 등 과세 문제점이 제기되었음
 - 예를 들어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 등에 의해 유류분 침해가 발생하여 유류분반환 소송이 발생함³⁾
 - 유류분이 침해되어 유류분반환 소송을 하더라도 이를 인정할지가 문제가 되는 데, 이와 관련해 일관적으로 적용되거나 확립된 판례 및 학계의 다수설이 없음
- 더불어 명확하지 않은 규정의 신탁을 통해 조세회피를 시도하는 등 조세회피 문제점이 제기되었음

□ 최근 2020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신탁과 관련한 개정안이 발표되었고, 기존에 존재 하던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과 관련해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일부 해결되었음

- (현행) 신탁소득에 대해서는 수익자 과세,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위탁자와 수탁자 과세 혼재

2) 금융감독원, 「신탁관련통계(2000~2020)」, <http://www.fss.or.kr/fss/kr/bbs/list.jsp?bbsid=1366595458384&url=/fss/kr/1366595458384>, 검색일자: 2020. 8. 13.

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나34855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 21720 판결; 대법원 2014. 7. 25. 자 2011스226 결정 등 판결이 난 사건이 있고, 이 외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들이 많음

- 신탁소득 과세방식이 획일적이어서 신탁제도 활성화 저해, 신탁을 통한 조세회피 가능 및 과세 불확실성 초래

○ (개정) ① 신탁유형 및 경제적 실질에 맞게 과세체계 정비 ② 신탁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 ③ 새로운 신탁제도에 대한 과세기준 명확화를 위해 종합 개편

① 신탁유형 및 경제적 실질에 맞게 과세체계 정비

- (소득세·법인세) 현행 수익자 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 선택 허용⁴⁾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신탁재산을 소유하고 계약당사자가 되는 수탁자로 변경⁵⁾

② 신탁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

-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하여 신탁한 부동산을 위탁자의 다른 재산과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

- (소득세·법인세) 위탁자를 실질 수익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납세의무 부과⁶⁾

③ 새로운 신탁제도에 대한 과세기준 명확화

- (상속세)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의 경우 위탁자 또는 수익자 사망 시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로 과세됨을 명확화

- (유언대용) 유증·사인증여와 동일하게 상속세 과세

- (수익자연속) 각 수익자에 귀속될 수익권의 가액을 한도로 상속세(연대) 납부의무 부여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상속과 관련한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 상속형 신탁과세를 중심으로 신탁에 대한 과세 제도를 살펴보고자 함

4) 소득 발생 시마다 소득을 수익자에게 배분하지 않고 신탁재산에 유보한 후, 향후에 배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신탁 운용의 효율성 제고

5) 거래당사자를 인식하기 쉽고, 세금계산서 수수 등이 명확해지는 효과. 다만 위탁자가 계약당사자(입대)이거나, 실질적으로 신탁재산을 지배·통제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탁자 납세의무 유지

6) 수익자가 없거나 위탁자가 신탁을 사실상 통제·지배하는 경우 등에는 위탁자가 자신의 소득 분산에 신탁을 활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탁자에게 과세

- 주요국과 비교 결과 신탁에 대한 전반적인 법제도 규정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 법 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과세제도 역시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검토가 필요해 보임
- 본 연구는 신탁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신탁제도를 살펴본 후 시사점을 도출하여 개선방향을 논의하고자 다음과 같이 구성함
- 제Ⅱ장에서 신탁에 대한 기본개념과 신탁과세이론을 살펴보고 해당 이론이 우리나라 세법상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살펴봄
 - 제Ⅲ장에서 우리나라의 신탁제도와 운영현황을 살펴본 후, 상속형 신탁 형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신탁과세제도에 대해 기술함
 - 제Ⅳ장에서 영국, 미국, 일본의 신탁제도와 운영현황을 살펴본 후 상속형 신탁 형태를 중심으로 주요국의 신탁과세제도와 유류분제도에 대해 기술함
 - 제Ⅴ장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의 상속형 신탁 중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 연속신탁, 수익자연속신탁을 통한 세대생략이전과세에 대한 과세제도, 유류분제도, 신탁존속기간을 비교·정리하고 상속형 신탁의 개선방향을 도출함

Ⅱ. 신탁의 기본개념

1. 신탁의 정의

- 신탁은 「신탁법」 제2조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정의됨⁷⁾
 -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인해 체결됨
 - 신탁 계약에 의해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이 가능함
 -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해 그 재산의 관리·처분·운용·개발 등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함

2. 신탁의 분류

- 신탁의 목적이 수익자의 이익인지 그 외의 특정 목적이 있는지에 따라 수익자신탁과 목적신탁으로 나뉨
 - 수익자신탁은 수익자가 위탁자인 경우에는 자익신탁, 제3자인 경우에는 타익신탁으로 분류됨
 - 목적신탁은 신탁 설정의 목적이 개인의 이익이면 사익신탁, 공익이면 공익신탁으로 나뉨

7)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 이상과 같이 분류된 신탁은 세부적으로 위탁자가 누구인가, 신탁의 목적이 무엇인가, 수탁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종류가 구분됨
 - 위탁자가 누구냐에 따라 개인신탁과 법인신탁으로 구분됨
 - 신탁의 목적에 따라 가족신탁과 운영신탁으로 구분되며, 가족신탁은 그 세부목적에 따라 증여형 신탁, 상속형 신탁, 후견형 신탁으로 구분됨
 - 누가 수탁자가 되느냐에 따라 상사신탁과 민사신탁으로 구분됨

- 수탁자에 따른 신탁 구분을 추가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음⁸⁾
 - 상사신탁은 일명 영리신탁으로, 수탁자가 수익자의 이익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신탁을 인수하는 행위를 함
 - 신탁업이 이에 해당하며,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음
 - 민사신탁은 일명 비영리신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이 아닌 특정 목적의 비영업 신탁을 인수하는 행위를 함
 - 상사신탁을 제외한 모든 신탁은 민사신탁에 해당되며, 「신탁법」의 적용을 받음
 - 일반적으로 수탁자는 주로 위탁자의 가족이나 위탁자와 신뢰 관계에 있는 전문가가 됨

3. 신탁과세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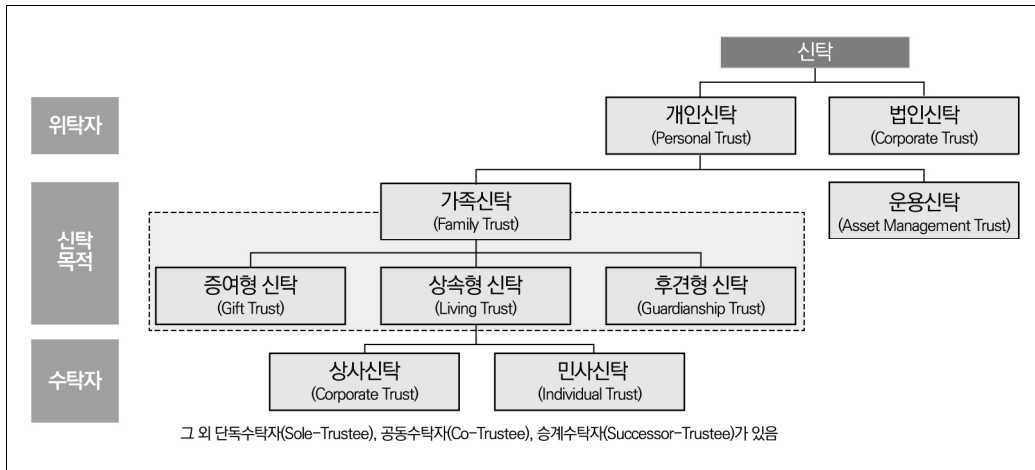
가. 신탁실체이론

1) 정의

- 신탁실체이론(the trust entity theory)은 신탁 자체를 독립된 실체로 간주해 이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는 견해로, 과세주체에 따라 수탁자 과세주체설과 신탁재산

8) 본 연구에서는 민사신탁을 중심으로 연구할 예정이기에 수탁자에 따른 신탁 구분만 추가적으로 작성함

[그림 II-1] 신탁의 종류



자료: 저자 작성

과세주체설로 나뉨

- 수탁자 과세주체설은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된다는 채권설의 영향을 받아, 수탁자를 과세주체로 하여 신탁세제를 운영해야 한다는 견해임
- 신탁재산 과세주체설은 신탁재산을 독립된 주체로 보는 실질적 법주체설의 영향을 받아, 신탁재산을 과세주체로 하여 신탁세제를 운영해야 한다는 견해임

2) 납세의무자와 이중과세

- 신탁실체이론상에서 신탁이 과세실체가 되기에 신탁소득의 납세의무자가 되며, 수익자 역시 신탁소득 분배받을 때 납세의무를 지게 되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함
 - 재산출연에 의해 설립된 신탁은 수탁자의 형태를 따라가기에 수탁자가 개인이나 법인이나를 구분하여 과세하며, 이후 해당 신탁에서 발생한 소득이 수익자에게 분배될 때 수익자의 형태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됨
 - 즉 신탁소득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시점과 수익자에 분배되는 시점에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기에, 배당세액공제 등과 같은 이중과세 조정장치가 필요함

3) 과세대상 소득의 범위

- 신탁실체이론에서는 신탁 자체가 과세주체가기에 그 실체를 법인으로 취급하여 신탁에 귀속되는 모든 손익을 합산하여 과세함⁹⁾
 - 세법상 법인에 「법인세법」의 순자산증가설¹⁰⁾에 따라 손익을 합산해 과세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소득의 범위가 결정됨
 - 이에 따라 미실현 손익도 과세대상에 포함됨
 - 수익자의 경우 배당소득으로 간주되기에, 종합과세 기준금액인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됨¹¹⁾

4) 신탁소득 구분

- 신탁실체이론에 의해 신탁은 독립된 과세주체로 인정되어 신탁운용에 따라 발생한 소득을 수익자가 배분받게 되면, 그 소득의 원천에 상관없이 배당소득으로 취급되어 과세됨
 - 예를 들어, 위탁자가 신탁회사와 부동산 신탁을 계약하고 이후 해당 부동산을 임대해 발생한 임대료를 수익자에게 지급할 시, 해당 소득은 신탁실체이론에 근거해 소득유형의 전환이 이루어져 임대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취급되어 과세됨

9) 손영철, 「신탁소득 원천징수 시기에 대한 연구」, 『법학논총』, 제20권 제2호,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p. 228.

10) 순자산증가설(increased net asset theory)에서 소득이란, 일정기간 내의 재산 증가의 총액에서 그 기간 내에 발생한 재산 감소의 총액을 차감한 잔액임. 우리나라 현행 「법인세법」은 순자산증가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법인세법」 제14조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이익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이 경우에 이익(益金)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하고, 손금(損金)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 하는 손비의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참조조문] 법인세법 14·15 ①·19 ①; 국세청 용어사전, 「순자산증가설」,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dictionary/wordList.jsp>, 검색일자: 2020. 8. 13.

11)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5) 소득 귀속 시기

- 신탁실체이론에서는 신탁재산에 소득이 귀속되는 시점이 신탁재산의 소득 귀속 시기가 되고, 수익자는 신탁소득을 분배받는 시점이 수익자의 신탁소득 귀속 시기가 됨¹²⁾
- 신탁실체이론에 따라 소득 귀속 시기가 구분될 경우, 수익자가 수익을 분배받을 때를 과세시기로 보아, 투자신탁에서 발생하는 과세이연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하지만 현행법상 자연인과 법인만을 인격체로 인정한다는 체계와 충돌함

6) 원천징수 의무자

- 신탁실체이론에 의해 신탁에 귀속되는 소득의 원천징수 의무자는 신탁재산에 소득을 지급하는 제3자가 되고, 수익자가 분배받는 소득의 원천징수 의무자는 신탁을 관리하는 수탁자가 됨
- 수익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자는 신탁재산의 수탁자¹³⁾이며, 신탁보수를 공제한 금액이 원천징수 대상소득이 됨¹⁴⁾

나. 신탁도관이론

1) 정의

- 신탁도관이론(the trust conduit theory)은 신탁재산을 독립적인 실체로 인정하지 않고, 신탁을 단순히 신탁으로 인한 수익을 수익자에게 배분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 소득이 귀속되는 수익자에게 과세해야 한다는 이론임¹⁵⁾
- 신탁소득은 운용과정에서 발생된 소득의 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해 과세함

12) 김재진·홍용식, 『신탁과세제도의 합리화 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998, p. 105.

13) 신탁회사가 이에 해당됨

14) 정준섭·노혁준, 『신탁법의 쟁점(제2권)』, 소화, 2015, p. 320.

15) 김재진·홍용식, 1998, p. 104.

- 신탁수익은 신탁보수를 차감하기 전 금액으로 간주되지만 신탁보수를 제외한 수익자단계에서 발생하는 비과세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없음¹⁶⁾
 - 신탁보수는 과세대상이기에 납세의무를 지님

2) 납세의무자와 이중과세

- 신탁도관이론상에서 신탁은 과세 실체가 아니기에 납세의무자는 신탁소득의 수익자인 개인 또는 법인이 됨
 - 이 경우 수익자단계에서 과세됨에 따라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 수익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소득세,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를 과세함

3) 과세대상 소득의 범위

- 신탁도관이론에서는 수익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보아, 수익자의 형태에 따라 과세대상소득의 범위가 결정됨¹⁷⁾
 -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의 소득원천설¹⁸⁾에 따라 과세소득의 범위가 결정되어 상장주식 매매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소득이 반영됨
 -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의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과세소득의 범위가 결정됨

4) 신탁소득 구분

- 신탁도관이론에 따라 신탁소득은 운용에 따라 발생한 소득원천에 따라 구분 과세됨

16) 정준섭·노혁준, 2015, pp. 319~320.

17) 손영철, 2008, p. 228.

18) 소득원천설(income source theory)은 일정한 수입원천으로부터 계속적·반복적으로 생기는 수입을 소득으로 보고, 일시적·우발적인 소득은 원천(源泉)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학설임.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은 기본적으로 소득원천설의 입장에 서 있으나, 기타소득으로서의 일시적·우발적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보험차익이나 국고보조금을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순자산증가설의 입장을 일부 채택하고 있음. [참조조문] 소법 21, 소령 51(국세청 용어사전, 「소득원천설」,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dictionary/wordList.jsp>, 검색일자: 2020. 8. 13. 참조)

- 예를 들어, 위탁자가 신탁회사와 부동산 신탁을 계약하고 이후 해당 부동산을 임대해 발생한 임대료를 수익자에게 지급할 시, 해당 소득은 그 원천에 따라 임대소득으로 구분되어 과세됨

5) 소득 귀속 시기

- 신탁도관이론에 의해 신탁재산을 수익자가 보유하는 것으로 보기에 신탁재산에 소득이 귀속되는 시점을 수익자의 신탁소득 귀속 시기로 간주함¹⁹⁾
 - 단 투자신탁의 경우 위탁자가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수익자에게 소득이 귀속될 때마다 과세하기 어려우므로, 수익을 분배할 때 과세함

6) 원천징수 의무자

- 신탁도관이론에 의해 신탁재산에 소득이 귀속되는 시점을 수익자의 신탁소득 귀속 시기로 보기에, 수익자가 받게 되는 소득의 원천징수 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제3자가 됨

4. 우리나라 세법상 이론 적용

가. 납세의무자와 이중과세

- 「소득세법」 제2조의2 제6항²⁰⁾와 「법인세법」 제5조²¹⁾에 따르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신탁의 수익자에게 귀속되므로 납세의무자 역시 수익자가 되어 도관이론이 적용된 것으로 보임

19) 김재진·홍용식, 1998, p. 105.

20) 「소득세법」 제2조의2 제6항

21) 「법인세법」 제5조

- 즉 수익자단계에서 과세됨에 따라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나. 과세대상 소득의 범위

- 과세대상 소득의 범위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의 경우 수익자에게 소득의 발생원천과 상관없이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있기에 신탁실체이론이 적용된다고 보임
- 단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의 경우 배당소득에서 일부 손익을 제외하는 조항이 있어 해당 경우에는 신탁도관이론이 적용된다고 보임²²⁾
-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의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과세소득의 범위가 결정됨

다. 신탁소득 구분

- 신탁소득 구분 측면에서 보았을 때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은 배당소득, 그 외 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은 소득원천별로 구분 과세하기에 원칙적으로는 도관이론이지만 특정신탁에 대해서는 실체이론을 적용한다고 보임

라. 소득 귀속 시기

- 신탁소득이 귀속되는 시기 측면에서 보았을 때 투자신탁과 일반신탁은 원칙적으로는 도관이론을 적용하지만 부분적으로 실체이론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임²³⁾
- 투자신탁은 신탁에 소득이 귀속되는 시점에는 누구에게도 과세를 하지 않으나 신탁수익을 수익자에게 배분할 때를 실질적인 수입 발생 시기로 보아 납세의무를 부과함

22)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

23) 예상국, 「세법상 신탁과세이론 적용에 관한 연구 - 법인세법 제5조 제1항과 소득세법 제2조의 제6항을 중심으로」, 『법학논문집』, 제40집 제3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6, p. 342.

- 신탁에 신탁소득이 귀속되는 시점에는 누구의 소득으로도 인식하지 않아 수탁자에게도 납세의무를 부과하지 않기에, 이는 도관이론으로 볼 수 있음
- 신탁수익을 수익자에게 배분할 때를 실질적 수입 발생 시기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실체이론으로 볼 수 있음
- 일반신탁은 신탁재산에 소득이 귀속되는 시점을 수입이 발생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하지만, 실무의 어려움 등으로 3개월 동안 귀속된 소득을 한 번에 원천징수하고 있음
 - 이는 단순히 신탁소득의 귀속 시기를 연장해 적용한 것이기에 도관이론이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음

마. 원천징수 의무자

- 원천징수의무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신탁업자가 신탁을 운용 및 관리하는 경우 해당 신탁업자가 원천징수의무를 대리 및 위임받은 것으로 보기에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에 소득이 귀속될 때 원천징수할 수 있음²⁴⁾
- 일반신탁의 경우에도 수탁자는 수익자에게 신탁소득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신탁재산으로 귀속된 소득에 대해 3개월 이내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 추후 해당 세금은 신탁재산에서 차감하게 됨
- 원천징수 시기는 신탁소득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시기와 관련성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도관이론이 적용되고, 부분적으로 실체이론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음

24) 「소득세법」 제127조 제4항

〈표 II-1〉 신탁실체이론과 신탁도관이론 비교

구분	신탁실체이론	신탁도관이론	우리나라 세법 적용
납세의무자와 이중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탁재산 자체¹⁾ 중복과세 발생으로 이 중과세 조정장치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수익자: 소득세 법인수익자: 법인세 중복과세 발생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납세의무자: 수익자 중복과세 없음 도관이론 적용
과세 소득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탁재산 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수익자: 「소득세법」의 ‘소득원천설’에 따라 결정 법인수익자: 「법인세법」의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칙적으로 도관이론 적용 일부 실체이론 적용
신탁소득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탁소득 모두 배당소득 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탁 운용 과정의 소득 원천별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정 요건 충족한 집합 투자기구: 실체이론 그 이외 신탁: 도관이론
신탁소득 귀속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탁재산: 신탁재산에 소득 귀속시점 수익자: 수익자가 신탁재산으로부터 소득 분배받는 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탁재산에 신탁소득이 귀속되는 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칙적으로 도관이론 적용 일부 실체이론 적용
원천징수 의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탁재산에 소득을 지급하는 제3자 신탁재산 관리하는 수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탁재산에 소득을 지급하는 제3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칙적으로 도관이론 적용 일부 실체이론 적용

주: 1) 법인으로 취급 시 법인세 적용됨
 자료: 예상국, 2016, p. 3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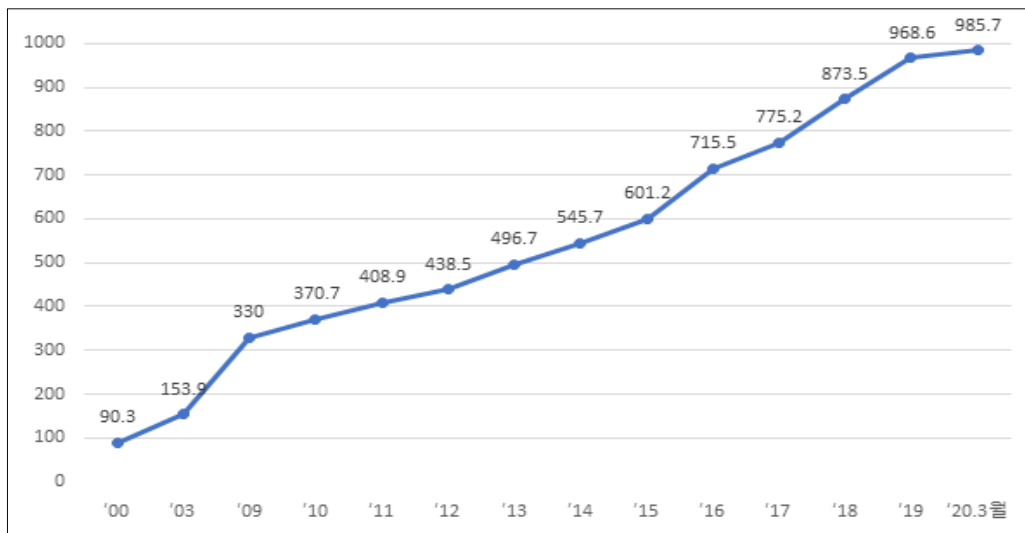
Ⅲ. 우리나라 신탁제도 및 현황

1. 신탁 운영 현황

- 우리나라의 신탁 운영 현황은 [그림 Ⅲ-1]에서 볼 수 있듯이 2000년도부터 2020년 3월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2000년도에는 은행, 부동산투자신탁사에서만 신탁을 운영하였으나 점차 증권사, 보험사까지 신탁을 운영하게 됨

[그림 Ⅲ-1] 연도별 신탁 수탁고 추이

(단위: 조원)



자료: 금융감독원, 「신탁관련통계(2000~2020)」, <http://www.fss.or.kr/fss/kr/bbs/list.jsp?bbsid=1366595458384&url=/fss/kr/1366595458384>, 검색일자: 2020. 8. 13.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운영되는 신탁의 종류는 자산별로 크게 금전신탁, 재산신탁, 기타신탁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표 Ⅲ-1>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신탁이 전반적으로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금전신탁에는 불특정금전신탁,²⁵⁾ 특정금전신탁,²⁶⁾ 퇴직연금신탁이 있음
 - 재산신탁에는 금전채권, 부동산신탁, 유가증권이 있음

〈표 Ⅲ-1〉 신탁 종류별 연도별 신탁 수탁고 추이

(단위: 조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3.
금 전 신탁 ¹⁾	불특정	15.8	13.8	13.2	13.6	14.2	14.8	15.6	16.2	16.4	16.6	16.4
	특 정	123.1	156	199.8	233.5	272.4	306.9	352.8	379.5	420.9	467.3	474.6
	퇴직연금	18.7	32.1	44.5	55.8	72.1	85.9	99.3	116.7	135	157.1	158.5
	소 계	138.9	169.8	213	247.2	286.6	321.7	368.4	395.7	437.3	483.9	491
재 산 신탁	금전채권	51.2	54.7	66.6	92.5	99.6	102.2	156.1	160	179.8	194.3	191.9
	부동산	175.7	179.2	151.9	147.3	153	171.5	187.5	215.2	251.2	285.8	299.2
	토지	19.2	23.2	26	28	31.1	38.3	47.1	56	64.9	70.7	72.4
	관리	17.9	16.5	13.7	13.2	14.3	15.1	15.7	15	15.8	15.2	15.3
	처분	21.3	17.3	11.4	12.1	7.6	7.6	7.3	6.2	6.6	6.4	7.5
	담보	117.2	122.3	100.9	94	99.9	110.5	117.4	138	163.9	193.5	204
	유가증권	4.7	5.3	7	9.4	6.2	5.2	3.3	4.2	5.1	4.4	3.3
소 계	231.6	239.2	225.5	249.3	258.8	278.9	347	379.4	436.1	484.5	494.4	
기 타	담보부 사채 등	0.2	0	0	0.3	0.3	0.6	0.1	0.2	0.1	0.2	0.3
총신탁계		370.7	408.9	438.5	496.7	545.7	601.2	715.5	775.2	873.5	968.6	985.7

주: 1) 2004. 7월(「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부터 연금저축신탁상품을 제외한 불특정금전신탁 신규 가입 금지. 연금저축신탁상품은 2018. 1월부터 신규 가입 금지(단, 기존 가입자는 추가납입 가능).
 자료: 금융감독원, 「신탁관련통계(2000~2020)」, <http://www.fss.or.kr/fss/kr/bbs/list.jsp?bbsid=1366595458384&url=/fss/kr/1366595458384>, 검색일자: 2020. 8. 13.

- 25) 불특정금전신탁은 고객이 상품을 지정하지 않고 신탁운용사가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한 뒤 수익금을 나눠주는 실적 배당 상품을 말함. 일반불특정금전신탁, 가계금전신탁, 개인연금신탁, 연금신탁, 퇴직신탁, 부동산투자신탁, 유언신탁 등의 종류가 있음
- 26) 특정금전신탁은 고객이 직접 자산운용 방법을 지정하는 신탁상품을 말하며, 투자대상에 대한 정보는 고객과 신탁운용사만 알기에 특정 상장기업을 은밀히 인수·합병(M&A)하는 데 쓰이기도 함

2. 신탁 관련 제도

가. 「신탁법」 및 「자본시장법」

- 신탁관계를 규정하는 법령으로는 「신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이 있음
 - 「신탁법」은 신탁에 관한 일반법으로 일반인들 간에 이루어지는 비영리신탁(민사신탁)과 신탁업자가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는 영리신탁(상사신탁)에 적용됨
 - 「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은 신탁업자를 규율하는 법률임
 - 금융투자업규정은 영업신탁의 실무적인 부분을 규율하는 법령임
 - 「신탁법」과 「자본시장법」이 충돌하면 비영리신탁의 경우에는 「신탁법」이, 영리신탁의 경우에는 「특별법인 자본시장법」이 우선 적용됨

〈표 Ⅲ-2〉 신탁 적용 법령

구분	「신탁법」	「자본시장법」
비영리신탁(민사신탁)	적용됨	적용 안 됨
영리신탁(상사신탁)	적용됨	적용됨

자료: 저자 작성

나.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1) 「소득세법」

- 집합투자기구 이외의 신탁에서 발생한 수익은 수탁자에게 이전되고, 신탁재산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은 소득 원천별로 구분하여 수익자에게 과세함²⁷⁾
 - 신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수익자에 귀속됨²⁸⁾

27) 「소득세법」 제4조 제2항

- 단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또는 상속인에게 귀속됨
- 수익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소득세법」을 적용함
- 2020년 세법 개정안에서는 현행과 같이 수익자 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을 선택하는 것을 허용
 - 기존의 방식과 같이 소득 발생 시마다 소득을 수익자에게 배분하지 않고 신탁재산에 유보해 향후 배분할 수 있도록 개정함

2) 「법인세법」²⁹⁾

- 신탁의 수익자가 법인인 경우, 신탁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의 익금에 속하기에 법인세가 과세됨³⁰⁾
 - 「소득세법」과 마찬가지로 신탁소득은 수익자에 귀속됨³¹⁾
 - 단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또는 상속인에게 귀속됨
 - 「자본시장법」을 적용받는 신탁법인의 소득은 위탁자 또는 수익자로부터 신탁재산을 관리 및 운용해 줌으로써 받는 신탁보수만 소득으로 인식됨³²⁾
 - 신탁법인이 운영하는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신탁법인에 귀속되지 않고 세법상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수익으로 인식됨
 -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내국인(거주자) 등으로부터 신탁이익을 지급받는 경우,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기에 법인세가 부과됨³³⁾

28) 「소득세법」 제2조의2 제6항

29) 본 연구는 「소득세법」과 「상증세법」을 중심으로 연구할 예정이라 여기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않을 예정임

30)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31) 「법인세법」 제5조 제1항

32) 「법인세법」 제5조 제2항

33) 「법인세법」 제93조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수익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시점은 다음과 같음
 - 수익자가 신탁수익을 실지급받는 시점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³⁴⁾
 - 신탁수익을 실지급받기 전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실제로 소유하지 않더라도 위탁자가 사망한 날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함³⁵⁾
 - 이후 위탁자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해 상속세를 계산하고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됨³⁶⁾
 - 신탁 계약상 지급일이 약정된 경우에는 약정된 날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도 약정상 지급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함³⁷⁾
 - 신탁수익을 여러 차례 나누어 받은 경우에는 수익을 최초로 지급받은 시점에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함³⁸⁾³⁹⁾
 - 단 신탁 계약 시 수익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수익을 실지급받는 시점마다 과세함

- 위탁자의 사망에 따른 신탁재산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자익 신탁인지 타익신탁인지에 따라 달라짐
 - 자익신탁의 경우, 위탁자가 사망하면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상속재산⁴⁰⁾에 포함되

34) 「상증세법 제33조

35) 「상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

36)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

37) 「상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38) 「상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2항

39) 해당 조항의 해석에 따라 증여세 과세시점 및 금액이 달라진다는 견해가 있음(손영철·이한우, 「신탁이익의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문제」, 『조세와 법』, 제12권 제2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pp. 10~12.)

40) 「상증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봄. 하지만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이익 가액을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기에 「상증세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의 정의는 자익신탁에 해당됨

어 상속세가 과세됨⁴¹⁾

- 타익신탁의 경우,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수익자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포함되지 않기에 과세할 수 없음⁴²⁾
 - 타익신탁에서 수익자가 신탁수익을 실지급받기 전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이 증여되었다고 간주되어 상속세를 과세할 수 없음⁴³⁾⁴⁴⁾
 - 피상속인이 사망 전 타익신탁의 수익자로 설정된 경우, 해당 신탁재산은 피상속인 사망 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됨⁴⁵⁾⁴⁶⁾
- 2020년 세법 개정안에서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의 경우, 위탁자 또는 수익자 사망 시 상속세로 과세하는 것으로 개정함
- 유언대용신탁은 유증 및 사인증여와 동일하게 상속세로 과세함
 - 수익자연속신탁은 각 수익자에게 귀속될 수익권의 가액을 한도로 상속세 납부 의무를 부여함

3. 우리나라의 상속형 신탁

가. 유언신탁

1) 제도

- 유언신탁(testamentary trust)은 유언에 의해 설정되는 신탁을 말함⁴⁷⁾

41) 「상증세법」 제9조 제1항

42) 「상증세법」 제9조 제1항

43) 「상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을 통해 신탁수익이 제3자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규정함

44) 「상증세법 시행령」 제5조

45) 「상증세법」 제9조 제2항

46) 재산 01254-4391,1989. 12.1; 재산 01254-4759,1989. 12.28.

47) 「신탁법」 제3조 제1항 제2호

- 유언방식을 통해 위탁자가 수탁자, 수익자, 신탁재산 등을 설정할 수 있음
- 유언자의 의사표시 자체는 생전에 이루어지지만, 신탁의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시점에 발생하기에 사후신탁이라고도 함⁴⁸⁾

- 유언신탁은 유언에 의해 설정되기에 유언에 대한 일반적인 법리가 적용됨⁴⁹⁾
 - 「신탁법」에서는 따로 유언신탁의 설정방법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설정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민법」상에서 정한 유언과 관련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⁵⁰⁾
 - 유언과 동일하게 생존 중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유언의 내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 가능함⁵¹⁾

2) 쟁점사항

- 서울고등법원 2013나69189 판결의 경우, 유언신탁과 관련한 사례로 법원에서는 해당 유언신탁의 유효성을 인정한 판결임
 - 해당 사례는 중환자실에 입원한 노인이 2010년 9월 8일 다음과 같이 유언을 하자, 해당 유언의 유효성과 관련해 제기된 소송임
 - 북한에 두고 온 자녀(재북 자녀) 4명⁵²⁾에게 서울 소재의 건물과 대지를 팔아 해당 매각금의 2/17를 유증하고 나머지는 조카와 조카의 아들(중손자) 등에게 유증함
 - 이때 재북 자녀에게 유증한 매각금은 증권회사를 수탁자로, 해당 자녀를 수익자로 10년간 신탁을 설정함

48) 「민법」 제1073조 제1항

49) 최동식, 『신탁법』, 법문사, 2006, p. 69.

50)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언의 방식은 5가지임.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제 1066조) ② 녹음에 의한 유언(「민법」 제1067조) ③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제1068조) ④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제1069조) 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제1070조). 「민법」에서는 본법에 정한바에 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유언에 대해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고 이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유언은 무효로 함

51) 「민법」 제1108조

52) 판결문에 따르면 2003년과 2009년 6월경 유언자는 북한에 있는 자녀들의 생사 확인 및 중국에서 자녀 일부와 상봉하였음

- 10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자녀들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거나 수증재산의 수익에 대한 명시적 의사 확인이 안되는 경우, 종손자에게 유증함
 - 아들은 해당 유언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지만 법원은 유언자의 유언능력을 인정함
 - 해당 신탁의 경우, 신탁기간의 제한 및 유언자 사망 이후 상속인과 관련한 쟁점이 발생할 수 있음
- 만약 해당 유언신탁에서 10년이라는 신탁 설정 기간을 두지 않고 실질적으로 재북 자녀 혹은 재북 자녀의 자녀에게 유증하기 위해 10년 이상의 기간을 설정한다면 해당 신탁은 유효한가에 대한 쟁점이 발생함
- 우리나라 「신탁법」에는 신탁의 존속기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더불어 「민법」 등에서는 일반 사법의 법리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기에 존속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⁵³⁾
 - 신탁 설정 기간에 대해 정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임
- 유언자의 사망 이후 수익자의 상속인과 관련한 쟁점이 발생할 수 있음
- 해당 쟁점은 수익자연속신탁과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수익자연속신탁에서 기술할 예정임

나. 유언대용신탁

1) 제도

-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가 생존한 동안 계약을 체결하거나 선언을 통해 설정되는 생전신탁의 형태를 말함⁵⁴⁾

53) 법무부, 『신탁법 개정안 해설』, 법무부, 2010, p. 475.

54) 임채웅, 「유언신탁 및 유언대용신탁의 연구」, 『인권과 정의』, 제397권, 대한변호사협회, 2009, p. 397.

- 위탁자가 자신이 사망한 때에 수익자에게 기존의 수익권을 귀속시키는 형태를 보임
 - 또는 수익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신탁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수익권을 처음으로 부여하는 형태를 보임
 - 유언신탁과의 차이점은 유언대용신탁은 유언이 아니기에 유언의 방식을 따르지 않아도 되며, 유언법정주의의 제한도 받지 않는다는 점임
-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의 의도 또는 신탁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설정 가능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 가능함⁵⁵⁾
- 위탁자의 의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음
 - 신탁원본과 수입수익권을 수령하는 수익자
 - 수입수익권만 수령하는 수익자
 - 위탁자가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 신탁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음
 - 위탁자를 수익자로 한 신탁
 - 위탁자의 배우자를 수익자로 한 신탁
 - 제한능력자를 위한 신탁
 - 재량신탁
 - 낭비신탁
 - 보호신탁
- 유언대용신탁의 종류는 위탁자 사망 시 수익권을 취득하는 생전신탁(제1호)과 위탁자 사망 후 수익채권이 발생하는 생전신탁(제2호)이 있음
- 위탁자 사망 시 수익권을 취득하는 생전신탁은 위탁자 사망 전에는 보통 위탁자가 수익자(생전수익자)이고, 사망 시점에 효력이 발생해 수익권을 가지게 되어 수익자(사후수익자)가 되는 형태임⁵⁶⁾

55) 김병두, 「개정신탁법상의 유언대용신탁에 관한 소고」, 『민사법학』, 제64호, 한국민사법학회, 2013, pp. 12~15.

56) 「신탁법」 제59조 제1항 제1호

- 위탁자 사망 후 수익채권이 발생하는 생전신탁은 위탁자 사망 후 일정 시점이 되었을 때 수익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급부를 받는 형태임
 - 생전신탁이란 부분에서 제1호와 유형은 동일하지만, 제2호는 위탁자 생전에는 해당 신탁재산에 대한 다른 수익자가 존재하지 않음⁵⁷⁾
 - 즉 위탁자가 생전에 수익자를 지정하지만 해당 수익자는 위탁자가 사망한 이후에만 신탁재산에 대한 급부를 받을 수 있음

- 유언대용신탁은 일반적으로 신탁재산의 실제 수익자에게 과세함
 - 위탁자가 생존 중일 때 생전수익자가 위탁자 자신인 경우, 신탁재산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수익자인 위탁자에게 과세하기에, 실제로 수익을 수령할 때 다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음⁵⁸⁾
 - 만약 생전수익자가 제3자인 경우(타익신탁), 신탁재산에서 발생된 소득은 수익자인 제3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하고, 이후 실제로 수익을 수령할 때 증여세를 과세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시됨
 - 생전수익자가 위탁자 자신인 경우 위탁자가 사망하면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⁵⁹⁾되고,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위탁자 사망 시 수익권을 취득하는 사후수익자에게 소득세로 과세됨
 - 타익신탁의 경우 위탁자가 사망하면 신탁재산에서 원본수익권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고, 미분배 수입이익과 같은 초과분은 수익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⁶⁰⁾되어 상속세로 과세됨⁶¹⁾

-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사후수익자를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 신탁의 철회도 가능함

57) 법무부, 『신탁법 해설』, 법무부, 2012, p. 488.

58) 「법인세법」 제5조 제1항; 「소득세법」 제2조의2 제6항; 「소득세법」 제4조 제2항; 「소득세법」 제155조의2

59) 「상증세법」 제9조 제1항

60) 「상증세법」 제13조

61) 손영철·서종균, 『금융상품과 세법』, 삼일인포마인, 2018, p. 447.

- 신탁행위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아도 위탁자는 당연히 수익자 변경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⁶²⁾
 - 만약 위탁자의 수익자 변경권을 제지하기 위해서는 변경을 제한한다는 신탁행위를 따로 설정해야 함
 - 「신탁법」에서 변경권을 인정하고 사후수익자가 위탁자 생존 동안에는 법적으로 수익자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경우에 따라 신탁을 철회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⁶³⁾
- 사후수익자의 유형 및 경우에 따른 위탁자의 신탁 철회 가능 여부를 다음의 사례를 통해 살펴봄⁶⁴⁾
- 〈사례 1〉 위탁자가 생전수익자이고 자녀가 제1호 사후수익자인 경우
 - 〈사례 2〉 위탁자가 생전수익자이고 자녀가 제2호 사후수익자인 경우
 - 〈사례 3〉 위탁자가 생전수익자이고 자녀가 제2호 사후수익자이지만 신탁 계약 내용에 사후수익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
- 〈사례 1〉은 신탁 종료에 대한 특약이 없기에 위탁자가 생존하는 동안 자유롭게 신탁을 철회할 수 있음
- 신탁상에서 자녀 C와 D는 사후수익자로 지정되어 있지만, 위탁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신탁법」에 의해 법적 수익자가 될 수 없는 제1호 사후수익자임⁶⁵⁾
 - 위탁자 생전에는 해당 신탁의 법적 수익자는 위탁자밖에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탁법」에 의해 위탁자는 자유롭게 신탁을 철회할 수 있음⁶⁶⁾
 - 해당 신탁은 자익신탁에 속하며 수익자는 위탁자 생전에는 위탁자만 인정되고, 위탁자 사망 후에는 자녀 C와 D가 인정됨

62) 「신탁법」 제59조 제1항

63) 「신탁법」 제59조 제2항

64) 정소민, 「신탁을 통한 재산승계의 이론과 실무」, 『법학연구』, 제60호,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pp. 92~94. 사례 인용.

65) 「신탁법」 제59조 제1항 제1호

66) 「신탁법」 제99조 제2항, 단 해당 규정에는 위탁자뿐 아니라 상속인도 신탁 종료 및 철회가 가능함

- 이 경우 신탁수익 취득자에게 과세함에 따라 위탁자 생전에는 위탁자에게 과세되고, 위탁자 사망 후에는 자녀 C와 D에게 각각 수익분에 대해 과세됨

〈표 Ⅲ-3〉 사례 1. 위탁자가 생전수익자이고 자녀가 제1호 사후수익자인 경우

위탁자(A)는 B은행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함

- 위탁자(A)가 소유하는 아파트 X를 신탁재산으로 수탁자인 B은행에 이전함
- 위탁자(A)가 생존하는 동안은 위탁자(A)가 수익자로서 아파트 X의 임대료를 매월 신탁수익으로 지급받음
- 위탁자(A)가 사망하면 자녀 C와 D가 수익자가 되고, 수탁자는 신탁원본인 아파트 X를 처분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신탁보수 등 제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1/2씩을 수익자인 자녀 C와 D에게 지급함

자료: 정소민, 2019, pp. 92~93.

- 〈사례 2〉는 신탁 종료에 대한 특약이 없기에 위탁자는 생존하는 동안 자유롭게 신탁을 철회할 수 있음
 - 신탁상에서 수익자는 신탁 설정 시부터 위탁자, 자녀 C와 D이지만 자녀 C와 D는 위탁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신탁법」에 의해 신탁의 수익을 받을 수 없고 위탁자 사망 이후부터 신탁의 수익을 받는 제2호 사후수익자임⁶⁷⁾
 - 제1호 유형과 달리 제2호 유형은 신탁상에서는 신탁의 수익자로 설정되어 있으나, 위탁자 생전에는 신탁수익을 받을 수 없으므로 위탁자는 자유롭게 신탁을 철회할 수 있음⁶⁸⁾
 - 이 경우 신탁 설정상으로는 위탁자, 자녀 C와 D가 수익자이지만 수익에 대한 과세는 신탁수익 취득자에게 과세함에 따라, 위탁자 생전에는 위탁자에게 과세되고 위탁자 사망 후에는 자녀 C와 D에게 각각 수익분에 대해 과세됨

67) 「신탁법」 제59조 제1항 제2호

68) 「신탁법」 제99조 제2항, 단 해당 규정에는 위탁자뿐 아니라 상속인도 신탁 종료 및 철회가 가능함

〈표 III-4〉 사례 2. 위탁자가 생전수익자이고 자녀가 제2호 사후수익자인 경우

위탁자(A)는 B은행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함

- 위탁자(A)가 소유하는 아파트 X를 신탁재산으로 수탁자인 B은행에 이전함
- 유언대용신탁의 수익자는 위탁자(A), 자녀 C와 D로 함
- 위탁자가 생존하는 동안, 수탁자는 위탁자(A)에게 아파트 X의 임대료를 매월 신탁수익으로 지급하고, 수익자인 자녀 C와 D에게는 신탁수익을 지급하지 아니함
- 위탁자(A)가 사망하면, 수탁자는 아파트 X를 처분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신탁보수 등 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1/2씩을 수익자인 자녀 C와 D에게 지급함

자료: 정소민, 2019, p. 93.

- 〈사례 3〉은 〈사례 2〉와 동일한 유형이지만 신탁 종료에 대한 특약으로 인해 해당 특약이 정한 바에 따라 사후수익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에, 위탁자가 생존하는 동안 자유롭게 신탁을 철회할 수 없음
- 수익자는 〈사례 2〉와 동일하게 적용됨
 - 다만 신탁의 특약을 추가함에 따라 위탁자는 법적으로 특약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함⁶⁹⁾
 - 신탁수익에 대한 과세 역시 〈사례 2〉와 동일하게 적용됨

〈표 III-5〉 사례 3. 위탁자가 생전수익자이고 자녀가 제2호 사후수익자이지만 신탁 계약 내용에 사후수익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

위탁자(A)는 B은행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함

- 위탁자(A)가 소유하는 아파트 X를 신탁재산으로 수탁자인 B은행에 이전함
- 유언대용신탁의 수익자는 위탁자(A), 자녀 C와 D로 함
- 위탁자가 생존하는 동안, 수탁자는 위탁자(A)에게 아파트 X의 임대료를 매월 신탁수익으로 지급하고, 수익자인 자녀 C와 D에게는 신탁수익을 지급하지 아니함
- 위탁자(A)가 사망하면, 수탁자는 아파트 X를 처분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신탁보수 등 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1/2씩을 수익자인 자녀 C와 D에게 지급함
- 위탁자가 유언대용신탁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사후수익자 중 생존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수탁자에게 그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자료: 정소민, 2019, p. 94.

69) 「신탁법」 제59조 제2항; 「신탁법」 제99조 제4항

2) 쟁점사항

- 서울고등법원 2015나2065231 판결의 경우, 위탁자가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하며 특약을 설정하여 신탁해지가 불가능하자, 이를 해지해 달라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위탁자의 신탁계약을 인정한 사례임
- 해당 사례는 2012년경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위탁자가 2014년 8월 29일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하자, 이를 해지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임
- 위탁자(A)는 2012년경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받았고, 2014년 두 곳의 담당의사는 위탁자에 대해 ‘치료를 받고 있지만 인지능력이 저하되어 있다’라고 진단함⁷⁰⁾
 - 위탁자(A)는 2014년 8월 29일, 은행에 당시 시가 5억원 상당의 아파트와 현금 9억원을 신탁하며, 위탁자 생전에는 위탁자를 수익권자로 설정함
 - 단 딸 B가 위탁자를 대리하여 원고의 병원비와 요양비 전액 및 생활비와 간병비 목적으로 월 700만원 한도 내에서 은행에 청구하고 해당 금액을 신탁수익으로 지급함
 - 위탁자 사후에는 위탁자의 딸 4명(B, C, D, E)이 사후수익자가 됨
 - 단 특약으로 “위탁자가 본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사후 1차 수익자 중 생존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수탁자에게 그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설정함
 - 이후 위탁자의 자녀들은 해당 사건 제1심 소송 중 2015년 7월 31일에 위탁자에 대한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신청하였고, 2016년 9월 28일에 성년후견을 개시하는 심판이 내려짐
- 수익권자로 지정된 딸 B를 제외한 나머지 자녀들이 위탁자의 건강상 이유로 해당 신탁의 설정이 부당하다고 하였으나 법원은 해당 신탁의 내용이 「신탁법」에 위반되지 않고, 신탁계약의 해지, 변경에 생존하는 사후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는 것

70) 세란병원 담당의사는 2014년 10월 4일 위탁자(A)에 대해 중등도 알츠하이머로 약물 치료 중이고, 망상장애, 집행력·판단력 저하 증상이 있다고 진단함. 서울대학교병원 담당의사는 2014년 7월 24일 위탁자(A)에 대해 주의력, 기억력, 전두엽 기능(추상적·개념적 사고 관련)이 매우 저조하거나 경계선상의 손상 상태에 있고, 추상적 자극을 안정적으로 조직화하고 논리적으로 연상을 전개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로 진단함

이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보지 않은 판례임

- 해당 사례는 앞서 살펴본 신탁의 철회 중 <사례 3>과 관련한 사항으로, 특약에 의해 신탁을 마음대로 철회할 수 없도록 설정한 것임

- 유연대용신탁의 경우, 이상의 사례들과 같은 신탁 철회에 따른 쟁점 외에 위탁자 사후에 신탁재산 이외의 자산을 상속인들에게 상속하며 신탁재산에 대한 유류분 인정과 관련한 쟁점도 있음
- 유류분과 관련한 쟁점은 유류분제도에서 기술할 예정임

다. 수익자연속신탁

1) 제도

- 현행 수익자연속신탁은 연속수익의 승계원인을 사망으로 한정하고 있고, 신탁이익의 전부를 승계하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음
- 수익자연속 기능은 다음과 같음
 - ① 미래 시점까지 피상속인에 의한 승계재산의 통제
 - ② 장기간 신탁이 존속하는 경향
 - ③ 미래 시점에 대한 미확정 이익 존재
 - ④ 절대적 소유권을 시간적으로 수입수익(신탁수익)과 잔여수익(신탁원본)으로 분할승계
- 현행 규정은 수익자연속 기능 중 ①과 ②기능만을 채택하고 있음

- 신탁 설정 시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현존함이 요구되지 않기에,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신탁은 유효하게 설정 가능함⁷¹⁾

71) 「신탁법」 제67조

- 이러한 신탁의 유연성으로 인해 수익자가 순차적으로 수익을 영위하게 하는 수익자연속신탁을 가능하게 함
- 수익자연속신탁은 수익자 사망 시에 해당 수익자의 수익권이 소멸하고, 다른 자가 새로운 수익자가 되어 수익권을 취득하거나, 순차적으로 다른 자에게 수익권이 귀속되는 형태의 신탁을 말함
 - 「신탁법」 제60조⁷²⁾를 통해 신탁계약과 유언에 의한 수익자연속신탁에 관한 일반규정을 두고 있음
 - 신탁이익의 전부를 선순위 수익자에서 후순위 수익자로 순차적으로 이전시키는 형태를 취함
 - 수익권이 순차적으로 수익자에게 이전되더라도 해당 신탁재산의 소유권은 계속 수탁자에게 있음
- 수익자연속신탁은 「신탁법」상 위탁자 A가 사망한 후 B(제1수익자)에게, B가 사망한 후에는 C(제2수익자)에게, D(제3수익자)에게 순차적으로 이전하는 구조임⁷³⁾
 - 예를 들어 위탁자 A는 유언으로 수익권의 평가액이 10억원인 재산을 B에게 유증하고 연속수익자 B, C, D에게 순차적으로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신탁계약을 한 경우, 과세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짐
 - 유증받은 10억원의 수익권을 위탁자 A로부터 취득하면 B에게 상속세가 부과됨
 - 이후 B의 생애기간 동안 해당 수익권 중 3억원을 소비하고 사망한 경우, C는 7억원의 수익권을 취득하게 되고, C에게도 상속세가 부과됨
 - 이후 C의 생애기간 동안 2억원을 소비한 후 사망한 경우, D는 5억원의 수익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담하게 됨
 - 즉 신탁이익을 모두 선순위 수익자에서 후순위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구조를 취

72) 「신탁법」 제60조는 “수익자연속신탁은 신탁행위로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이 소멸하고 타인이 새로 수익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뜻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사망에 의하여 차례로 타인이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함.

73) 김종해·박창덕·김병일, 「수익자연속신탁에 따른 세대생략이전세제에 관한 연구」, 『조세연구』, 제19권 제3집, 한국조세연구포럼, 2019, p. 87.

하고 있음

- 수익자연속신탁의 장점은 다음과 같음
 - 상당 기간 동안 위탁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큰 제한 없이 신탁재산의 수익과 귀속을 결정할 수 있음
 - 생존배우자 등의 생활 보장 또는 기업경영, 농업경영 등의 재산승계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 활용 가능함
 - 수탁자를 통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신탁재산 활용이 가능함

- 수익자연속신탁의 과세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각각의 경우는 다음의 가정례를 통해 살펴봄
 - 위탁자 사망 시의 상속세 과세
 - 배우자 사망 시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
 - 장남(C)의 신탁계약 해지와 과세

〈표 III-6〉 수익자연속신탁의 가정례

- 위탁자(A)가 생전에는 자신(A)을 수입수익자로 지정함
- 자신이 사망한 후에는 배우자(B)를 수입수익자로 지정함
-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는 장남(C)을 원본수익자 및 수입수익자로 지정함

자료: 손영철·서종균, 2018, p. 448; 손영철·이한우, 2019, p. 23.

- 위탁자 사망 시 연속수익자별로 다음과 같이 원본 및 수입수익권을 평가해 상속세를 과세함⁷⁴⁾
 - 위탁자(A)의 사망 후 배우자(B)는 B의 생존기간 중 신탁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누림
- 이때 해당 수익권의 가치는 매년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현금흐름을 배우자(B)의 기대 여명 동안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함

74) 손영철·서종균, 2018, p. 448; 손영철·이한우, 2019, p. 23.

- 장남(C)의 수익권의 가치는 상속개시일 시점에서 미래에 누릴 원본 및 수입수익권을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함
 - 이때 미래에 수령할 기간이 확정되지 않았기에 배우자(B)의 기대 여명 연수가 종료한 이후의 수익을 수령한 것으로 간주해, 신탁계약 종료일까지 할인해 평가함
 - 연속수익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신탁재산의 수익에는 공통적으로 소득세가 과세됨
- 배우자 사망 시 장남이 받는 수입수익권에 대해 상속세를 과세하기 어려우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⁷⁵⁾
- 배우자(B)의 수입수익권은 위탁자(A)에 의해 주어진 일신전속적권리⁷⁶⁾이기에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되는 재산이라 보기 어려움
 - 배우자(B)의 수입수익권은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소유'가 아니라 배우자(B)가 살아있는 동안 '향유'하는 것이기에 「상증세법」 제9조 제2항⁷⁷⁾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배우자(B)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음
 - 장남(C)의 입장에서는 위탁자의 배우자이자 장남의 어머니인 B의 사망으로 인하여 수입수익권을 승계하였지만, 이는 애초에 위탁자(A)의 신탁계약에 의해 승계받은 것임
 - 장남(C)이 배우자(B)의 사망으로 승계받는 수입수익권은 이미 C가 상속세를 부담하고 취득한 재산적 권리를 이제야 향유하는 것이기에, 배우자(B)의 사망으로 인해 승계받더라도 다시 상속세를 부담할 이유는 없음
- 장남(C)이 신탁의 원본 및 수입수익권자일 때 일반적인 과세와 신탁계약을 해지할 경우 과세는 다음과 같음⁷⁸⁾
- 배우자(B)의 사망 후 장남(C)에게 부과될 세목은 다음과 같음
 - 장남(C)이 원본 및 수입수익권자일 때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은 수익자인

75) 손영철·서종균, 2018, p. 448; 손영철·이한우, 2019, p. 26.

76) 권리의 성질상 특정 권리주체만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 또는 그 주체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77) 「상증세법」 제9조 제2항의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78) 손영철·서종균, 2018, p. 448; 손영철·이한우, 2019, p. 27.

장남(C)에게 소득세로 부과됨

- 장남(C)이 신탁재산의 원본을 처분할 경우 신탁재산의 종류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 이때 장남(C)이 승계받는 수입수익권은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음
- 배우자(B)의 사망 후 원본 및 수입수익권자가 되는 장남(C)이 신탁계약을 해지하여 원본 및 수입수익을 실제로 수령한 경우에도 실수령한 수익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됨⁷⁹⁾
 - 해당 원본수익은 위탁자(A)의 사망 시점에 장남(C)이 이미 상속세를 납부하고 지금 수령한 것이기에 추가로 증여세를 다시 과세할 수 없음

□ 상속과 관련된 일반적인 세대생략이전과세 규정은 다음과 같음

-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재산 출세액에 상속재산⁸⁰⁾ 중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30%⁸¹⁾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함⁸²⁾
 - 「민법」 제1001조에 따른 대습상속(代襲相續)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⁸³⁾

□ 증여와 관련된 일반적인 세대생략이전과세 규정은 다음과 같음

-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증여세 산출세액의 30%⁸⁴⁾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함⁸⁵⁾
 - 만약 미성년자가 20억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에는 40%를 가산함

79) 이때 장남(C)은 배우자(B)의 사망 후 수입수익권자의 지위에서 이미 수령한 수입을 제외하고 그 이후부터 해지 전까지의 수익에 대해 과세하는 경우를 말함

80)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

81)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함

82) 「상증세법」 제26조

83) 「상증세법」 제27조

84)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함

85) 「상증세법」 제26조

- 증여자의 최근친(最近親)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⁸⁶⁾
-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 동일한 재산에 대해 증여세와 상속세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증여세 산출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 세대생략이전과세상 혈족의 범위는 법률상 직계비속으로 한정하고 있음
 - 사실혼 관계로 인한 혈족은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현행 「상증세법」은 신탁이익에 대한 평가방법이 재산과세적 접근을 취하고 있지 않음
 - 신탁이익의 수익자가 다른 경우 신탁의 수익과 원본을 개별적으로 평가함
- 현행 법령에서는 유언대용신탁과 비교할 때 형평성이 맞지 않기에 수익자연속신탁에서는 신탁이익의 분리승계를 허용하지 않음
 - 현행 「신탁법」상 수익권의 성격에 대한 정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 대륙법계에서는 수익권을 물권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고 있음
 - 영미법계에서는 수익권을 채권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고 있음
 - 우리나라도 대륙법계에 속하기에 수익권의 소유권을 수직적으로 분리할 수 없다고 보는 경향도 있음

2) 쟁점사항

가) 수익자연속신탁의 수익자 사망 시 신탁 효력

- 앞서 유언신탁에서 소개한 서울고등법원 2013나69189 판결의 문제점 중 유언자

86) 「상증세법」 제57조

의 사망 이후 수익자의 상속인과 관련한 쟁점사항에 대해 기술하고자 함

- 해당 신탁의 사례는 위탁자(A)의 유언으로 위탁자의 재산 매각금을 증권회사에 신탁하며, 북한에 있는 자녀(재북 자녀)(B)를 수익자로 하고 10년이 지나거나 생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종손자(C)에게 지급한다고 설정함
 - 유언신탁이지만 재북 자녀(B)가 제1수익자, 종손자(C)가 제2수익자가 되는 수익자연속신탁으로 볼 수 있음⁸⁷⁾
- 해당 신탁에서는 수익자를 재북 자녀로 설정하였고, 남북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유언자가 사망하기에 앞서 수익자가 먼저 사망했을 가능성이 존재함
- 이 경우 유언자의 사망으로 인해 신탁의 효력이 발생하였을 때 수망한 수익자의 신탁 효력과 관련한 문제가 있음
 - 제1수익자 또는 제2수익자가 위탁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 제2수익자가 제1수익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 제1수익자 또는 제2수익자가 위탁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는 경우에 따라 달라짐⁸⁸⁾

- 제1수익자(B)가 위탁자(A)보다 먼저 사망하고 위탁자(A) 사망 시 제2수익자(C)가 살아있는 경우 제2수익자(C)의 신탁 효력이 발생하며, 반대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만약 제2수익자(C)가 위탁자(A)보다 먼저 사망하고 제1수익자(B)는 10년이 지났음에도 생사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해당 신탁은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해 종료됨

□ 제1수익자(B)와 제2수익자(C) 모두 위탁자(A)보다는 오래 살았지만, 제2수익자(C)가 제1수익자(B)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제2수익자(C)가 취득 예정이었던 수익권이 누

87) 「신탁법」 제60조에서는 수익자가 연속되는 사유로 사망하는 경우만 규정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망 이외의 다른 사유로 수익자가 변경되는 신탁 설정도 가능하다고 봄(임채웅, 2009, p. 130). 「신탁법」 제60조, 신탁행위로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이 소멸하고 타인이 새로 수익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뜻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사망에 의하여 차례로 타인이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함

88) 「신탁법」 제98조 제1호

구에게 귀속되는가에 관한 쟁점이 발생하고 다음과 같이 처리됨⁸⁹⁾

- 이 경우, 위탁자 사망 시 제1수익자(B)와 제2수익자(C) 모두 생존하여 동시존재의 원칙⁹⁰⁾이 충족되었기에 신탁의 효력이 발생함
 - 신탁 기간 10년이 지나도 제1수익자(B)의 생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받게 되는 신탁수익권
 - 유언상에서 유증받은 신탁수익권
- 신탁설정 기간 10년 이내 제2수익자(C)가 사망하고, 설정기간 10년이 지났음에도 제1수익자의 생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제1수익자(B)의 신탁수익권뿐 아니라 유언상에서 유증받은 신탁수익권 모두 제2수익자(C)의 상속인에게 상속됨

나) 대습상속 세대생략이전에 따른 세대생략가산액 공제

- 대법원 2016두54275 판결은 할증과세가 이루어진 후 대습상속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되었다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은 할증과세로 인한 세대생략가산액을 포함해야 한다고 판시함
 - 해당 판결에 대한 이유로 불가피하게 세대생략을 할 수 밖에 없는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세대생략할증과세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 세대생략할증과세 후 대습상속의 요건을 갖추어 상속인이 되었다면 세대생략을 통한 상속세 회피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으므로 할증과세에 따른 별도의 불이익을 줄 필요가 없는 점 등을 들
-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음
 - A는 6명의 자녀를 두었으며, 그중 자녀 B(배우자 C)의 자녀들인 손자 D와 E에게 각각 현금 5억원, 현금 3억원을 증여함

89) 「민법」 제149조; 「민법」 제154조

90) 상속이 개시될 때에 상속인이 권리능력자일 것을 요하는 원칙

- 손자 D와 E는 A의 직계비속에 해당하기에 증여 당시 증여세 세액산출액에 30%가 가산된 금액(세대생략가산액)을 증여세로 납부함
- 증여 후 A가 사망했으나 그 이전에 자녀 B가 A보다 먼저 사망했고, 이에 따라 자녀 B의 상속인들인 C, D, E는 A의 대습상속인이 되어 A의 나머지 자녀들과 함께 A의 재산을 공동상속 받게 됨
- 이에 관할 세무서장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A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해 상속세액을 산정해 부과 고지함
 - 이때 관할 세무서장은 손자 D와 E에 대한 사전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며, 가산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세대생략가산액이 포함되지 않은 증여재산 출세액만 공제해 세액을 산정하고 부과 고지함

4. 우리나라의 유류분제도

가. 제도

- 우리나라 유류분제도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받을 것이라는 상속 기대권을 보장하고 남은 상속인의 생계를 보장해 주기 위해 「민법」에서 채택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유류분제도는 1977년 개정 시 신설되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⁹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을 유류분으로 가짐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을 유류분으로 가짐

91) 「민법」 제1112조

〈표 Ⅲ-7〉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 비율

유류분 청구권자	유류분 비율
직계비속	법정상속분의 1/2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	법정상속분의 1/3
형제자매	법정상속분의 1/3

자료: 저자 정리

- 유류분의 산정⁹²⁾방법은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부'를 공제하여 산정함
- 유류분을 산정하기 위해 포함되어야 할 증여⁹³⁾에 대해 「민법」에서는 “상속 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하여진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생전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해 유류분에 부족이 생길 시 해당 부족 한도에서 해당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유류분의 보전에 대해 규정함⁹⁴⁾
 - 증여에 관해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반환의 순서⁹⁵⁾를 규정하고 있음
 - 소멸시효는 청구권을 대상으로 하며, 「민법」에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⁹⁶⁾
 - 「민법」 제1001조 대습상속에 관한 유류분,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유류분, 제1010조 대습상속분에 관한 유류분에 대하여 준용규정을 두고 있음⁹⁷⁾

92) 「민법」 제1113조

93) 「민법」 제1114조

94) 「민법」 제1115조

95) 「민법」 제1116조

96) 「민법」 제1117조

97) 「민법」 제1118조

〈표 III-8〉 유류분 침해액 산정방식(「민법」상)

<p>유류분 침해액 =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그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B)] - 그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그 유류분권자의 순상속액(D)</p> <p>A = 적극적 상속재산 + 산입될 증여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1/3 C = 그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익액 D = 그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따라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분담액</p>
--

자료: 윤진수, 『민법논고 VIII』, 박영사, 2015, p. 363.

나. 상속형 신탁과 유류분반환청구⁹⁸⁾

□ 유류분반환에 따라 상속재산 가액이 달라질 경우 과세문제가 발생하기에, 상속형 신탁의 종류에 따라 발생하는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자에 대해서만 간략히 정리함

1) 유언신탁

- 위탁자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에 신탁재산이 포함되어 있고, 신탁으로 인해 신탁재산이 수탁자에게 이전됨에 따라 상속재산에서 신탁재산의 가치만큼 감소되기에 유류분권자는 수탁자에게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수익자가 취득한 수익권은 신탁재산에서 비롯되기에 수익자는 수익권을 위탁자로부터 유증받았다고 보아 유류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함

2) 유언대용신탁

□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이전되지만 실질적 이익을 취득하는 자는 수익자이기에,

98) 정소민, 「신탁을 통한 재산승계와 유류분반환청구권」, 『한양법학』, 제28권 제2호, 한양법학회, 2017, pp. 220~236의 내용을 기반으로 필요한 부분만 일부 인용함

수익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것이 타당함

- 「민법」에서는 유류분반환청구와 관련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라고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음⁹⁹⁾
- 유언대용신탁의 특수성과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고려하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수익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확정할 수 없는 등 특수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유류분권자가 수탁자를 상대로도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탄력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임

3) 수익자연속신탁

- 수익자연속신탁의 경우, 유언대용신탁과 결합하면 여러 세대에 걸친 재산승계가 이루어져 누가 수익자인지 확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김
 - 일반적으로 수탁자 또는 제1수익자를 대상으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단 제1수익자가 사망함으로써 인해 수익권을 제2수익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제2수익자에게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다. 쟁점사항

1) 유류분반환에 따른 상속세

- 조심 2015서2383은 A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유류분에 관한 세무서가 상속세를 경정·고지한 것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재판부는 이에 대해 납부하라는 판결을 함

99) 「민법」 제1117조

- A는 상속세 처분청을 상대로 상속개시일 10년 이전에 피상속인의 증여가 있었기에 해당 증여재산가액은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이 안 된다고 주장함
 - 해당 판결을 통해 유류분을 반환받은 경우, 과거에 이루어진 증여 또는 유증의 효력이 상실되어 유류분반환 받은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됨
 - 상속 개시 10년 전에 증여 사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됨을 판시함
- 해당 경우 A는 과거에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환급받는 증여세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을 당시의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됨
- 상속세는 피상속인 사망 당시의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됨
 - 단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이 유류분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음
 - 이때 증여세와 별도로 납부한 취득세는 기관과 상관없이 환급되지 않음
 -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지 15년이 경과했다면 유류분반환을 하더라도 증여세 환급이 되지 않음

2) 유언대용신탁의 재산과 유류분 포함 여부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가합408489 판결¹⁰⁰⁾은 유언대용신탁을 한 재산은 유류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로 해당 소송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음
- 위탁자(A)는 아들 B, 딸 C와 D를 자녀로 두고 있고, 2014년경 현금 3억과 3개의 부동산을 은행과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생전수익자는 위탁자(A) 본인으로, 사후수익자를 딸 C로 설정함
 - 이후 위탁자(A)가 2017년 11월경 사망하고 사후수익자인 딸 C는 같은 달 신탁

100) 해당 판결을 유언대용신탁을 한 신탁재산이 유류분반환대상이 아니라고 선언한 판결이라 단정할 수는 없음

부동산에 대해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현금 3억원을 신탁계좌에서 출금함

- 이에 대해 아들 B의 부인과 자녀들이 대습상속인으로서 딸 C를 상대로 11억여 원의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함

- 해당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다음의 사유로 해당 신탁재산은 생전에 증여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유류분 산정의 기초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결함
 - 위탁자(A) 사망 당시 해당 신탁재산은 수탁자인 은행에 이전되어 있었기에 대내외적인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더불어 수탁자에게로의 신탁재산 이전은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바가 없기에 성질상 무상이전에 해당¹⁰¹⁾하지만 수탁자는 해당 재산의 상속인이 아님
 - 또한 신탁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상속이 개시된 시점보다 1년 이상 전에 이루어졌고, 수탁자는 계약 당시 계약 체결로 인해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음

- 요약하면 해당 판결은 신탁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로 포함되는가와 관련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 위탁자의 사후에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기에 증여로 취급할 수 없음
 - 위탁자(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유언신탁을 통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있기에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에 포함되지 않음
 - 위탁자가 수탁자로부터 대가를 받지 않고 이전했기에 성질상 무상이전에 해당하고, 만약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상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가액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에 포함됨¹⁰²⁾

101) 「민법」 제1114조,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한 증여에서 무상처분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에 포함이 가능하다고 해석 가능함

102) 「민법」 제1114조

5. 우리나라 신탁의 과세 현황

가. 일반원칙

- 우리나라는 신탁에서 발생한 수익은 수탁자에게 이전되고, 신탁재산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은 소득 원천별로 구분하여 수익자에게 과세함¹⁰³⁾
- 우리나라 신탁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신탁의 수익자에게 귀속되기에 납세의무자 역시 수익자가 되는 도관이론을 따르고 있음¹⁰⁴⁾
 - 「소득세법」상 신탁에서 발생된 수익은 신탁의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봄¹⁰⁵⁾
 - 「법인세법」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에 적용함¹⁰⁶⁾
 - 이 외에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수익자 내지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과세체계를 취하고 있음¹⁰⁷⁾
- 2020 세법 개정을 통하여 소득세·법인세는 현행처럼 수익자 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음
 -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이 허용됨에 따라 해당 신탁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도 조정함
 - 현재는 신탁소득 발생 시 신탁단계에서 과세하지 않고 수익자단계에서 과세되었으나, 개정 후 신탁소득에 대하여 신탁단계에서 과세하고 신탁이익 지급 시 수익자에게 과세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음

103) 「소득세법」 제4조 제2항

104) 「소득세법」 제2조의2 제6항; 「법인세법」 제5조

105) 「소득세법」 제2조의2(납세의무의 범위)

106) 「법인세법」 제5조(신탁소득) 제1항

107) 「국세기본법」 제14조

나. 상속 및 증여세

- 증여세는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을 증여일로 하고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부과함¹⁰⁸⁾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함¹⁰⁹⁾
 - 신탁의 설정단계에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는 증여로 보지 않아 과세하지 않음
 - 신탁수익을 실지급받기 전에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실제로 소유하지 않더라도 위탁자가 사망한 날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함¹¹⁰⁾

- 위탁자가 어떠한 대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타인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수익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됨(「상증세법」 제33조)
 - 수익권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임

- 단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하여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의 경우 위탁자 또는 수익자 사망 시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로 과세되도록 명문화하였음

- 「상증세법」에서는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수령 시에 증여세를 과세하고, 「소득세법」에서는 신탁재산에 소득이 귀속되는 시점에 소득세를 과세한다는 차이점이 있음

108) 「상증세법」 제33조(신탁이익의 증여)

109) 「상증세법」 제9조 제1항

110) 「상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

다. 위탁자신탁 및 철회가능신탁

- 우리나라 신탁은 수익자과세를 따르고 있어 위탁자신탁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으나, 자익신탁과 부동산 신탁의 경우 위탁자에 과세함
 - 자익신탁은 위탁자가 사망할 경우,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인 등에게 상속세가 과세됨¹¹¹⁾
 - 이 밖에도 2020 세법 개정으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되어 위탁자가 납세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음
 -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되어 신탁한 부동산을 위탁자의 다른 재산과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
 - 개정 전에는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였으며, 부동산을 신탁함으로써 위탁자의 다른 부동산과 합산 배제가 가능하였음

- 우리나라 민사신탁은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1:1 대응관계에 있어 철회 불가능을 전제로 하지만, 유언대용신탁은 철회가 가능한 철회가능신탁임¹¹²⁾
 - 「신탁법」상 유언대용신탁의 위탁자는 언제든지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가 있음¹¹³⁾
 - 「신탁법」에 따르면 위탁자와 수익자는 합의하여 언제든지 신탁을 종료할 수 있음¹¹⁴⁾
 -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 또한 신탁행위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¹¹⁵⁾
 - 따라서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 사망 이전까지 철회가 가능하므로, 신탁의 이익을 확정할 수 없어 신탁 원본과 수익 역시 확정할 수 없음
 -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가 철회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실제로 지급

111) 「상증세법」 제9조 제1항

112) 손영철·이한우, 2019, p. 5.

113) 「신탁법」 제59조 제1항

114) 「신탁법」 제99조

115) 「신탁법」 제101조 제1항

받는 각각의 시점을 증여 시기로 볼 수 있음

라. 자산의 상속 및 증여에 따른 소득세

- 「소득세법」상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가 부과됨¹¹⁶⁾
- 신탁계약에 의하여 신탁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수익자는 원본 또는 이익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 등을 증여일로 하여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함¹¹⁷⁾
- 신탁이익의 평가 시에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차감하도록 함¹¹⁸⁾
 - 원본과 수익 이익의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

$$\text{평가액} = \frac{\text{신탁재산가액} + \text{각 연도에 받을 수익의 이익} - \text{원천징수세액 상당액}}{(1 + \text{신탁재산의 평균수익률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n}$$

* n: 평가기준일부터 수익시기까지의 연수

- 원본과 수익의 이익의 수익자가 다른 경우

1) 원본의 이익을 수령하는 경우

$$\text{평가액} = \frac{\text{평가기준일 현재 원본의 가액}}{(1 + \text{신탁재산의 평균수익률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n}$$

* n: 평가기준일부터 수익시기까지의 연수

116) 「소득세법」 제2조의2

117) 「상증세법」 제33조

118) 「상증세법 시행령」 제61조

2) 수익의 이익을 수익하는 경우

$$\text{평가액} = \frac{\text{각 연도에 받을 수익의 이익} - \text{원천징수세액 상당액}}{(1 + \text{신탁재산의 평균수익률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n}$$

* n: 평가기준일부터 수익시기까지의 연수

마. 유언대용신탁

-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의 생존과 사망에 따라 상속세 및 소득세가 달리 부과될 수 있음¹¹⁹⁾¹²⁰⁾¹²¹⁾
 - 위탁자 생존 시 수익자가 위탁자 본인인 경우,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수익자인 위탁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됨
 - 위탁자 생존 시 수익자가 위탁자가 아닌 경우,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수익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고, 수익자가 그 소득을 수령할 때 다시 증여세가 과세됨

-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 신탁재산의 원본과 수익에 대하여 수익자에게 상속세가 부과됨¹²²⁾
 - 위탁자 사망 시 수익자가 위탁자 본인인 경우,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됨¹²³⁾

119) 「법인세법」 제5조 제1항
 120) 「소득세법」 제2조의2
 121) 「소득세법」 제4조 제2항
 122) 2020 소득세 개정안은 유언대용신탁의 위탁자 사망 시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로 과세되도록 규정함
 123) 「상증세법」 제9조 제1항

바. 수익자연속신탁 및 세대생략이전과세

- 수익자연속신탁은 수입수익인 수익권을 연속하는 것으로, 그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있으므로 수입수익자에게 수입수익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함
 - 수익자연속신탁은 위탁자 사망 시 원본과 수입수익권 등에 대하여 수익자별로 분할하여 상속세가 부과됨
 - 신탁 이익의 평가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계산됨

- 수익자연속신탁을 통하여 세대생략의 상속이 가능하며, 최종 수익자 단계까지 상속세 과세 부담 없이 이전할 수 있음
 - 수익자연속신탁의 경우 수익자가 사망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수익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이전되는 수익권에 대하여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 상속세로 과세하여야 할 원본이 최종 수익자 단계까지 상속세 과세 부담 없이 이전할 수 있음¹²⁴⁾
 - 세대생략이전과세 대상 혈족의 범위는 법률상 직계비속으로 한정함

124) 손영철·이한우, 2019, pp. 33~34.

IV. 주요국의 신탁제도 및 현황

1. 영국

가. 영국 신탁제도

- 영국은 신탁이 발생한 국가로서 최초로 신탁을 제도화하였으며, 가족신탁 중심으로 발전하였음
 - 위탁자의 재산을 상속과 증여를 목적으로 하는 중세시대의 유스(use)제도¹²⁵⁾에서 현대 신탁으로 발전함

- 현재 영국의 신탁 전반에 대한 규제는 「수탁자법(Trustee Act 2000)」을 따르고 있으며, 신탁업자의 행위 규제는 「금융서비스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FSMA)」을 적용함¹²⁶⁾
 - 「수탁자법」은 신탁법제를 통일한 것으로 수탁자의 권한·책임을 새롭게 규정하고 신탁재산을 활용한 이익 증대 등을 제도화함
 - FSMA 및 하위 규정인 영업행위준칙에서 신탁업자의 행위 규제 등을 원칙 중심에 근거하여 기술함¹²⁷⁾

125) 영국 중세시대 교회에 일반인의 토지 기부현상을 막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126) 자본시장연구원·금융연구원·보험연구원 공동연구, 『국내 신탁업 현황 분석 및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 필요과제 도출』, 금융위원회, 2017, p. 91.

127) COBS §18.1

- 영국 신탁제도와 관련된 「수탁자법」은 수탁자와 위탁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함
 - 「수탁자법」은 수탁자의 관리의무(The Duty of Care)에 따라 수익자 보호의무와 신탁재산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수탁자의 권한과 책임을 기술하고 있음¹²⁸⁾
 - 신뢰체계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형성된 채권관계에 따라 수탁자에게 신뢰의무를 부여하여 수익자를 보호하며, 내용상 유연성을 통한 당사자 간 자유로운 결정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¹²⁹⁾
 - 위탁자가 문서 계약을 통하여 신탁 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합리적인 투자기준을 갖추고 정기적인 투자 현황을 점검할 의무가 있음¹³⁰⁾

- 영국 신탁은 도관이론을 적용하지만, 「신탁법」상 신탁을 법인으로 파악하여 신탁·수익자·위탁자 모두를 납세의무자로 봄
 - 영국은 신탁의 당사자로 위탁자(settlor), 수탁자(trustee), 수익자(beneficiary)로 구분하고 있음
 - 위탁자는 신탁재산을 위탁하며 신탁재산의 사용에 관한 결정을 하고 신탁재산으로부터 수익을 얻을 수 있음
 -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법적 소유자가 되지만 신탁재산을 소유하지 않고 수탁재산을 관리함
 - 수익자는 신탁재산으로부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신탁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영국의 신탁은 거주자신탁(resident trusts)과 비거주자신탁(Non-resident trusts)으로 나뉘며, 거주자신탁에 대해 과세하고 있음¹³¹⁾
 - 거주자신탁은 일반적으로 상사신탁과 가족신탁, 공익신탁 등으로 나뉘며, 상사

128) trustee act 2000 §1 The duty of care

129) 김병일·김종해, 「영국의 신탁과세제도와 그 시사점」, 『세무학연구』, 제28권 제3호, 한국세무학회, 2011, p. 143; John H. Langbein, *The Secret Life of The Trust: The Trust as an Instrument of Commerce*, 107 Yale L. J., 1997, pp. 179~185.

130) trustee act 2000 §4 Standard investment criteria

131) ITA 2007, Ch 3, Pt 9, § 475. Residence of trustees

신탁은 증권발행과 집합투자 등을 목적으로 함

- 가족신탁은 상속·증여를 통해 가족 등에게 재산을 이전할 목적으로 하며, 가족 신탁에는 보호신탁, 비밀신탁, 장애인신탁, 아동신탁 등이 있음
- 공익신탁은 수익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종교와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함

□ 영국 국세청(HM Revenue & Customs, HMRC)은 일반신탁을 수동신탁(Bare Trusts), 권리소유신탁(Interest in Possession Trusts, IIP), 재량신탁(Discretionary Trusts), 누적신탁(Accumulation Trusts),¹³²⁾ 위탁자관련신탁(Settlor-interested Trusts),¹³³⁾ 혼합신탁(Mixed Trusts) 등 여섯 가지로 분류하고 있음¹³⁴⁾

- 수동신탁은 양도자가 신탁재산을 미성년자에게 이전할 때 이용함
 - 신탁의 수익자는 신탁 원본과 수익에 대해 권리를 가지기에 수탁자에게 재량 권을 부여하지 않음¹³⁵⁾
 - 해당 신탁의 수익자는 신탁이익의 납세의무를 지님
- 권리소유신탁은 현재 귀속 가능한 수익권 등과 같은 확정이익(fixed interests)을 하나 이상 가지고 있는 신탁을 말함
 - 수탁자는 수익을 수익자에게 이전하기에 해당 수익은 자동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됨
 - 단 생애수익자(life tenant) 또는 생애수익보유자(have a life interest)라 불리는 수입수익자(income beneficiary)는 위탁자산(trust capital, 원본)에 대한 권리는 없음
- 재량신탁은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해 법적소유권을 가진 경우를 말함
 - 수탁자의 책임은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을 운영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132) 재량신탁과 누적신탁의 경우, 다른 신탁에 비해 수탁자에게 넓은 재량권을 부여하며 또한 해당 재량권에 의해 유보되거나 재량된 소득에 대해 특별 세율을 적용함(ITA 2007, Pt9, §§ 479 and 480~482).

133) 위탁자관련신탁은 조세회피법률에 의해 위탁자에게만 과세되는 형태를 가짐

134) 영국 정부, "Types of trust," <https://www.gov.uk/trusts-taxes/types-of-trust>, 검색일자: 2020. 8. 14.

135) FA 2003, Sch 16 para 1(2). bare trust, TCGA 1992, § 60 capital gain tax

운용수익을 이용할 재량권을 부여함

- 수탁자의 재량권은 ① 지급할 금액의 크기 ② 수익의 수령자 ③ 지급 횟수 ④ 수령자에게 지급되는 상황 등에 관한 결정사항 등을 포함하며, 신탁소득을 유보할 수 있음

○ 누적관리신탁은 2006년 「재정법」에서 재량신탁으로 이전하며 기존의 누적관리 신탁의 구조를 이용하는 신탁을 말함

○ 위탁자관련신탁은 위탁자 본인이 자신을 위해 신탁에 자산 이전을 설정하는 형태를 말함

- 신탁으로부터 위탁자의 특수관계자인, 위탁자의 배우자, 「민법」상 파트너 등이 수익을 얻는 경우에도 해당됨

- 사전소유자산(Pre-Owned Assets, POA)에 대하여 다음의 경우에 위탁자는 해당 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납세의무를 지님¹³⁶⁾

① 위탁자가 사전소유자산을 점유 및 사용하거나 신탁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특정자산을 소유하는 경우

② 신탁이 주식, 지분, 생명보험 등의 무형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③ 위탁자가 「소득세법」의 조세회피법률에 따라 조세를 부담하는 경우

- 단 다음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사전소유자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음¹³⁷⁾

① 신탁의 생애수익자(life tenant)가 되는 경우

② 「상속세법」상 위탁자산에서 발생한 이익을 유보하는 경우

③ 위탁자의 유산(estate)이 소유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이 있는 다른 자산을 포함하는 경우

□ 수동신탁은 위탁자에 의하여 신탁의 수익자가 지정되고, 수익자가 18세 이상이 되어야 신탁의 모든 자본과 이익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신탁임¹³⁸⁾

○ 수탁자는 신탁재산과 수익에 대한 권한이 없으며, 수탁자가 납세의 의무를 부담함

136) Section 84 and Schedule 15 of the Finance Act 2004.

137) Section 84 and Schedule 15 of the Finance Act 2004.

138) 영국 및 웨일즈의 경우 18세, 스코틀랜드의 경우 16세 이상 신탁에 대한 권리를 가짐

- 권리소유신탁(IIP)은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모든 신탁수익을 즉시 위탁자가 사전에 지정한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수익자는 수익에 대한 권리만 가질 수 있음¹³⁹⁾
 - 수탁자는 신탁에서 발생한 비용을 제외한 모든 수익을 이전하며, 납세의 의무 부담과 신탁 원본의 처분 권한을 가짐
 - 수익자는 신탁재산에 보유된 자본에 대한 권리가 없으며, 일반적으로 자본은 미래에 다른 수익자에게 전달됨
 - 그러나 수탁자는 수익자가 수익에 대한 권리만 있더라도 수익자에게 자본을 줄 수 있는 결정 권한이 있음

- 대부분의 재량신탁은 누적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재량신탁과 누적신탁을 가족신탁으로 간주함
 - 재량신탁은 수탁자의 판단에 따라 신탁의 수익자에게 부과할 모든 조건을 결정함
 -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지급할 지급액, 지급주기, 지불할 수익자 등을 결정함
 - 수탁자가 납세의 의무 부담과 신탁재산과 수익의 처리 권한을 가짐
 - 누적신탁은 수탁자가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하지 않고 자본에 축적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납세의 의무를 부담함

- 위탁자관련신탁은 위탁자가 납세의 의무를 지고 「민법」상 파트너(civil partner)가 수익을 얻는 신탁임¹⁴⁰⁾
 - 자녀신탁에는 위탁자관련신탁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설정하는 자녀신탁은 다음과 같음¹⁴¹⁾
 - 수동신탁
 - 권리소유신탁

139) 영국 정부, “Trusts Statistics september 2019 National Statistics,”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trusts-statistics-september-2019>, 검색일자: 2020. 8. 14.

140) 영국 정부, “Types of trust,” <https://www.gov.uk/trusts-taxes/types-of-trust>, 검색일자: 2020. 8. 14.

141) 영국 정부, “Parental trusts for children,” <https://www.gov.uk/trusts-taxes/parental-trusts-for-children>, 검색일자: 2020. 8. 14.

- 재량신탁
- 누적신탁

- 혼합신탁은 하나 이상의 유형을 조합한 신탁이며, 각 신탁의 소득이 둘 이상의 기준으로 과세되어 각각 해당되는 과세 방식을 따름
- 신탁은 수익자의 상황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될 수 있음
- 예를 들면, 18세와 14세의 두 자녀가 누적신탁의 수익자로 지정된 경우, 신탁의 조건에 따라 18세 이전까지 수익을 누적하고 18세가 되면 신탁의 수익을 받을 수 있게 됨
 - 첫째 자녀는 18세가 되고 둘째 자녀가 14세인 경우 첫 번째 자녀의 신탁 몫은 권리소유신탁으로 전환되고, 둘째 자녀는 18세가 될 때까지 누적신탁으로 유지됨
 - 즉 첫째 자녀가 18세가 되면 혼합신탁이 됨

〈표 IV-1〉 영국의 과세상 일반신탁의 분류

구분		내용
수탁자의 재량 인정	재량신탁	• 신탁소득 중 일부 유보 가능 • 수익자의 수익권 불인정
	누적신탁	• 신탁소득 중 일부 유보 가능 • 수익자의 수익권 불확실
수탁자의 재량 불인정	권리소유신탁	• 신탁소득 모두 분배 • 수익자의 수익권 인정
	수동신탁	• 수익자가 신탁소득과 신탁수익에 대한 권리 보유 • 신탁은 도관처럼 취급
위탁자의 권리 인정	위탁자 신탁	• 위탁자 또는 그 배우자의 수익권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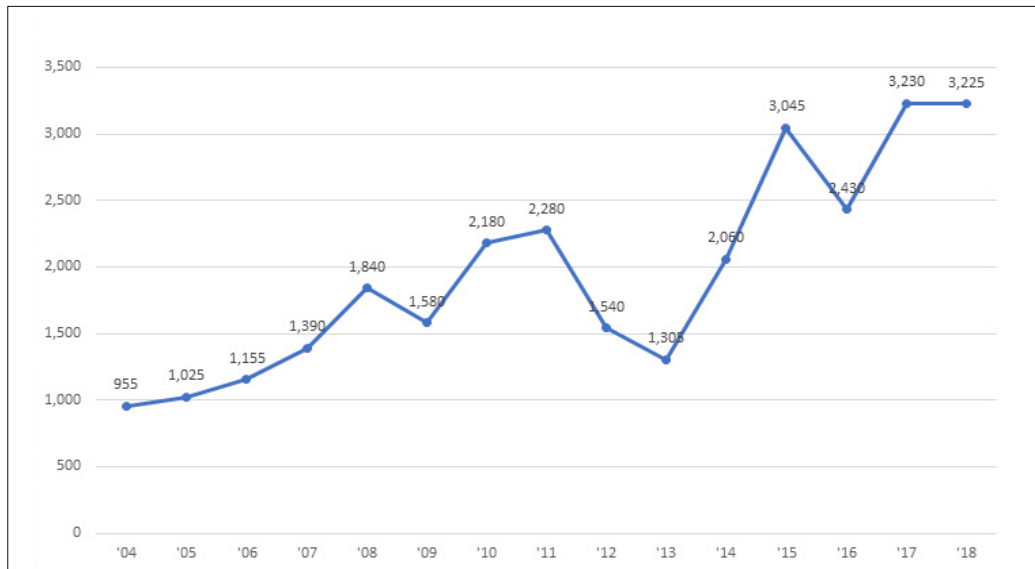
자료: 이종교, 「신탁 관련 소득과세의 문제점 및 개편방안」, 『세무와 회계연구』, 제9권 제3호,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2020, pp. 113~114.

나. 신탁 운영 현황

- 영국 정부의 발간자료 “Trusts Statistics”¹⁴²⁾에 의하면, 영국의 신탁 관련 과세소득은 [그림 IV-1]과 같이 2015~2016년에 잠시 감소하였으나 2016~2017년에 회복하는 추세를 보임

[그림 IV-1] 연도별 신탁 관련 과세소득

(단위: 100만파운드)



자료: 영국 정부, “Trusts Statistics september 2019 National Statistics,”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trusts-statistics-september-2019>, 검색일자: 2020. 8.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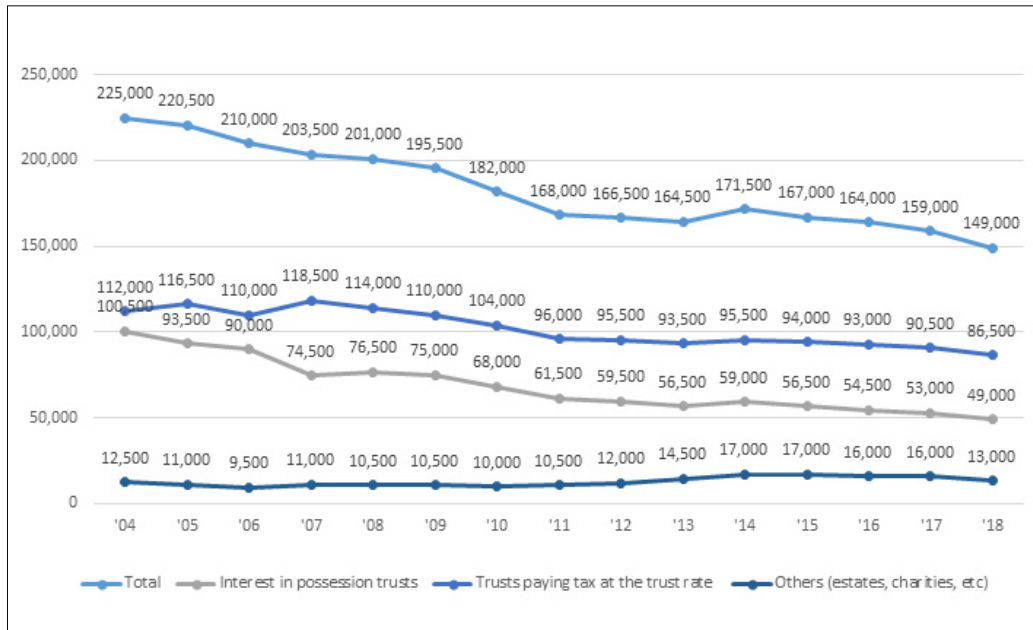
- 영국 정부는 신탁과 관련된 통계자료를 매년 발행하고 있으나, 영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권리소유신탁과 재량·누적신탁 크게 두 가지 범주로만 나누어 발표함¹⁴³⁾
 - 그러나 수탁자가 영국에 납세하는 해외신탁과 비가족신탁이 포함되어 있음

142) 영국 정부, “Trusts Statistics september 2019 National Statistics,”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trusts-statistics-september-2019>, 검색일자: 2020. 8. 14.

143) 영국 정부, “Trusts Statistics September 2019 National Statistics,”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trusts-statistics-september-2019>, 검색일자: 2020. 8.

[그림 IV-2] 영국 신탁 및 부동산 추이(2003~2018년)

(단위: 개)



자료: 영국 정부, “Trusts Statistics september 2019 National Statistics,”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trusts-statistics-september-2019>, 검색일자: 2020. 8. 14.

- 영국 정부의 “Trusts Statistics”에 따르면, [그림 IV-2]와 같이 영국 신탁 및 부동산 수는 4년 연속 감소하는 추세임
 - 2004~2005년에 약 22만 5천개의 신탁 및 부동산이 있었으나 2017~2018년에는 약 14만 9,500개로, 12년 동안 29% 감소하였음
- <표 IV-2>는 소득구간별 신탁 개수를 나타낸 것으로, 영국 정부 통계자료에서는 권리소유신탁과 재량·누적신탁으로 나누어 집계함¹⁴⁴⁾
 - 2017~2018년 권리소유신탁은 총 4만 9천개이고 신탁소득이 1천파운드 미만인 신탁이 41%인 2만개, 10만파운드 이상인 신탁이 약 3천개임

144) 영국 정부,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trusts-statistics-september-2019>, 검색일자: 2020. 8. 14.

- 신탁의 전체 수는 권리소유신탁, 재량·누적신탁(Trust paying tax at the trust rate) 모두 꾸준히 줄고 있고, 재량·누적신탁의 납세 신탁의 수는 8만 6,500개로, 전년도 보다 4천개 낮아진 수치임
 - 그러나 10만파운드 이상 신탁 이익을 기록한 개수는 늘어난 수치를 보임

〈표 IV-2〉 신탁소득 구간별 신탁 개수(2013~2018년)

(단위: 개²⁾)

구분	2013~2014		2014~2015		2015~2016		2016~2017		2017~2018	
	IIP	trusts ¹⁾	IIP	trusts	IIP	trusts	IIP	trusts	IIP	trusts
less than 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up to 1k	30,000	38,000	28,000	36,500	26,500	36,500	22,000	35,000	20,000	33,000
1k~5k	9,500	23,500	9,000	23,000	8,500	21,500	9,000	20,000	8,500	19,000
5k~10k	5,500	13,500	5,500	14,000	5,000	13,500	5,500	13,000	5,000	12,500
10k~20k	5,000	9,000	4,500	9,500	4,500	10,000	5,000	10,000	4,500	9,500
20k~50k	4,500	6,000	4,500	6,000	4,500	6,500	5,000	7,000	4,500	6,500
50k~100k	2,000	2,500	2,000	2,500	2,000	2,500	2,500	2,500	2,500	2,500
100k~more	2,500	2,500	2,500	2,500	2,500	3,000	3,000	3,000	3,000	3,000
total	59,000	95,500	56,500	94,000	54,500	93,000	52,000	90,500	49,000	86,500

주: 1) trust란 trusts paying tax at the trust rate를 의미하며, 재량·누적신탁이 이에 해당함
 2) 500개 단위로 반올림하여 표시하여 약간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영국 정부, "Trusts Statistics september 2019 National Statistics,"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trusts-statistics-september-2019>, 검색일자: 2020. 8. 14.

□ 〈표 IV-3〉은 신탁소득 구간별 신탁소득 합계를 나타냄

- 2017~2018년 약 8만 6,500개의 신탁이 있었으며, 이 가운데 약 3천개 신탁이 10만파운드 이상의 수익을 내어 특별신탁세율(45%)로 납부하는 신탁의 3%(815)가 전체 신탁소득의 59%를 차지하고 있음

〈표 IV-3〉 신탁소득 구간별 신탁소득 합계(2013~2018년)

(단위: 백만파운드²⁾)

구분	2013~2014		2014~2015		2015~2016		2016~2017		2017~2018	
	IIP	trusts ¹⁾	IIP	trusts	IIP	trusts	IIP	trusts	IIP	trusts
less than 0	-15	-5	-30	-5	-15	-5	-5	-5	-10	-5
up to 1k	5	5	5	5	5	5	5	5	-	5
1k~5k	25	70	25	65	25	65	25	60	25	60
5k~10k	40	100	40	105	35	105	40	105	40	95
10k~20k	65	120	65	120	65	125	70	120	70	125
20k~50k	125	160	125	160	125	165	135	155	130	165
50k~100k	120	120	115	125	115	135	125	125	130	130
100k~more	605	740	615	780	780	975	590	645	695	815
total	970	1,305	955	1,350	1,135	1,560	990	1,215	1,085	1,385

주: 1) trust란 trusts paying tax at the trust rate를 의미하며, 재량·누적신탁이 이에 해당함

2) 500개 단위로 반올림하여 표시되어 약간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영국 정부, "Trusts Statistics september 2019 National Statistics,"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trusts-statistics-september-2019>, 검색일자: 2020. 8. 14.

다. 신탁 과세 현황

1) 일반원칙

□ 영국은 신탁의 유형에 따라 세금이 달리 부과되며, 구체적으로 소득세(income tax Act, ITA), 자본이득세(Taxation of Chargeable Gains Act, CGT), 그리고 상속세(Inheritance Tax Act, IHT)가 부과됨¹⁴⁵⁾

- 영국 신탁은 소득의 원천에 따라 과세하는 분리과세 형식을 취하고 있음
- 영국 신탁은 상속세만 부과하고 증여는 자본이득 발생 시 자본이득세로 부과함

□ 영국은 영구구속 유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신탁의 존속기간을 21년으로 제한

145) 김병일·김종해, 2011, p. 148.

하고 있음¹⁴⁶⁾

- 신탁존속기간을 제한하여 신탁재산의 영구적 구속을 방지하는 조항으로, 신탁유보이익이 조세회피의 도구로 활용될 개연성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음
 - 이 조항은 유언자(testator)가 자신의 손주(자녀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까지 증여받을 수 없는 자를 말한다)에게 증여할 수도 있다는 전제로 만들어진 조항임

□ 신탁의 유형마다 서로 다른 소득세율이 적용되며, 신탁에는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가 포함됨¹⁴⁷⁾

- 수탁자는 수탁자로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책임이 있으며, 신탁의 수익자는 신탁소득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함
- 신탁의 소득세율은 배당소득을 제외한 기타 수익에 대하여 1천파운드까지 기존의 소득세 20%를 적용하며, 1천파운드 이상 신탁수익은 신탁특별세율인 45%를 적용함
 - 누적·재량신탁과 권리소유신탁의 배당형 소득에 대하여 1천파운드까지 7.5%를 부과하고, 누적신탁과 재량신탁은 1천파운드를 초과할 경우 38.1%의 소득세율을 적용함

□ 자본이득세는 신탁재산을 매각하면 부과될 수 있으며,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거나 감소하였을 때 부과됨¹⁴⁸⁾¹⁴⁹⁾

- 신탁재산을 위탁한 경우 양도한 수탁자에게 자본이득세가 부과될 수 있음
- 신탁재산을 팔거나 양도한 경우 수탁자는 수익자를 대신하여 자본이득세를 납부해야 함
 - 단 수동신탁이 신탁의 수익자에게 양도될 경우는 자본이득세가 부과되지 않음

146) Perpetuities and Accumulations Act 2009 § 5

147) 영국 정부, "Trusts and Income Tax," <https://www.gov.uk/trusts-taxes/trusts-and-income-tax>, 검색일자: 2020. 8. 14.

148) TCGA 1992 § 2

149) TCGA 1992 § 70

- 신탁에 부과되는 상속세는 개인이 사망 후 개인의 재산(their money and possessions)에 부과되며, 생전에 재산의 일부를 신탁으로 양도할 경우에도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음¹⁵⁰⁾
 - 자산이 신탁으로 이전될 경우 상속세를 부과함
 - 신탁 설립 후 10년이 경과하였을 때 상속세를 부과함(there are 10-yearly Inheritance Tax charges)
 - 신탁에서 자산을 처분(out of a trust)하거나 신탁이 종료되는 때 상속세를 부과함
 - 사망한 자의 재산을 정리(sorting out their estate)할 때 해당 자산이 신탁과 관련 있는 경우 상속세를 부과함

2) 위탁자신탁과세

- 영국은 위탁자가 납세의 의무를 부담하는 위탁자관련신탁(settlor - interested trust)이 있음¹⁵¹⁾
 - 위탁자가 납세의 의무를 지며, 위탁자 스스로 신탁에 자산을 이전하고 위탁자의 배우자, 특수관계자 등 「민법」상 파트너(civil partner)가 수익을 얻는 신탁임¹⁵²⁾
 - 이는 납세의무자가 신탁이익을 향유함과 동시에 신탁에 자산을 이전함으로써 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¹⁵³⁾
 - 18세 이하의 자녀가 위탁자로부터 증여받아 자녀들이 수령하는 불특정 소득이 포함됨¹⁵⁴⁾
 - 단 소득 금액이 100파운드 이하인 경우는 제외되며, 1999년 3월 9일 이전에 계약된 신탁도 제외됨

150) IHTA 1984 § 43

151) ITTOIA § 624

152) IHTA 1984 §54(2B)

153) 김병일·김종해, 2011, p. 153.

154) ITTOIA § 629

- 그러나 위탁자와 그의 자녀가 관련된 경우는 ‘자녀신탁(child trust)’으로 분류되며, 자녀신탁에는 위탁자관련신탁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3) 상속 및 증여에 따른 소득세

- 영국 신탁은 소득의 원천에 따라 과세하는 분리과세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신탁의 수익 원천에 따라 소득세와 자본이득세로 나누어 과세함
- 영국은 신탁의 유형에 따라 소득세를 다르게 부과하고 있음
 - 수탁자는 수탁자로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책임이 있으며, 신탁의 수익자도 신탁소득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함¹⁵⁵⁾
 - 권리소유신탁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일반세율 20%를 부과하며, 배당소득인 경우 배당보통이율의 10%를 부과하고 배당보상 금리의 경우 7.5%를 부과함¹⁵⁶⁾
 - 재량신탁과 누적신탁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신탁특별세율을 적용한 45%를 부과하고 배당소득인 경우 38.1% 부과함
 - 다만 1천파운드 이하 소득 구간에서는 권리소유신탁과 동일한 세율 부과
 - 2015년까지 배당금에 대하여 10%를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2016년 이후 공제제도가 폐지됨
- 영국은 신탁재산을 양도하였거나 양도받았을 경우 자본이득세를 과세함¹⁵⁷⁾
 - 일반적으로 수탁자는 수익자를 대신하여 자산을 매각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자본이득세를 지불해야 함
 - 수익자의 일정 조건이 충족되어 신탁재산의 권리를 갖게 되었을 때(특정 연령에 도달하였을 때) 자산의 시가에 따라 자본이득세를 과세함

155) ITTOIA 2005 §8

156) 영국 정부, “Trusts and Income Tax,” 2019, <https://www.gov.uk/trusts-taxes/trusts-and-income-tax>, 검색일자: 2020. 8. 14.

157) TCGA 1992 §2

- 수동신탁 등의 경우 자본이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 신탁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은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28%의 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자산에 대하여 20%를 적용함
 - 수탁자는 자산관리비용, 변호사 및 주식중개인 등에 지불하는 전문가 수수료, 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데 지불한 비용 등을 공제받아 자본이익을 줄일 수 있음
- 수탁자는 신탁의 총 과세소득이 신탁의 면세수당(연간 면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자본이득세를 지불하면 됨
 - 신탁의 일반 면세수당은 6,150파운드이며, 장애 또는 부모가 사망한 아동은 1만 2,300파운드를 적용함
 - 수혜자가 한 명 이상인 경우, 그중 한 명만 장애인이거나 부모가 사망한 아동 이더라도 더 높은 면세 수당을 적용할 수 있음

4) 상속 및 증여세

- 영국은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settled property)을 현금, 주식, 토지 및 부동산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영국 신탁은 상속세 상한금액인 32만 5천파운드 초과 금액에 대하여 40%의 세율로 과세하며, 재산 일부를 신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살아있을 때 적용 가능함¹⁵⁸⁾
 - 영국은 배우자나 동거인에게 상속하는 금액이 32만 5천파운드 이하일 경우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이를 'exempted gifts'로 규정하고 있음¹⁵⁹⁾
 - 선물로 간주되는 것은 현금, 재산, 소유물 등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연간 3천파운드 이내임

158) IHTA 1984 §8

159) IHTA 1984 §8J(5),(6)

- 신탁의 수탁자는 32만 5천파운드 이상 자산이 포함된 신탁은 설정된 날로부터 10년마다 상속세를 지불해야 함¹⁶⁰⁾¹⁶¹⁾
 - 재량·누적신탁 등이 이에 해당되며, 일부 유형의 신탁은 다르게 취급됨¹⁶²⁾
 - 신탁재산을 처분(exit charge)할 경우 수탁자가 상속세를 납부하며, 토지 및 건물과 같은 자산에 대해 최대 6%의 상속세가 부과됨

- 수동신탁, 장애인신탁 등 일부 신탁은 신탁 설정 후 7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아 완전 면세되나, 위탁자가 7년 이내에 사망할 경우 상속세 40%가 부과됨¹⁶³⁾
 - 이를 ‘taper relief’라고 하며, 사망하기 3~7년 전에 설정된 신탁에 차등 적용됨 - 증여 이후 3년 내에 사망할 경우 40%, 3~4년 사이의 경우 32%, 4~5년 사이는 24%, 5~6년 사이는 16%, 6~7년 사이는 8%임

- 영국 신탁은 유언대용신탁이라는 특정된 용어는 없으나, 위탁자가 생전에 신탁(Living Trust)을 설정하여 사망 후 신탁을 수익자에게 상속하는 방식을 허용하고 있음
 - 위탁자가 사망하기 전 신탁을 설정할 경우 상속세 상한금액인 32만 5천파운드 초과분에 대하여 20%의 세율로 상속세가 부과됨¹⁶⁴⁾¹⁶⁵⁾
 - 위탁자가 사망 전 신탁을 설정하고 7년이 경과한 경우 수탁자에게 40%의 상속세로 재계산되고, 신탁 설립 시 지불한 세금 20%에 대하여 공제됨

160) 이를 ‘The 10 year anniversary charge’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탁자가 소득을 축적하거나 신탁을 재량에 따라 운영할 수 있는 신탁의 유연성으로 인하여, 신탁 10주년세와 자산 처분에 대한 세금을 부과함

161) IHTA 1984 §160, §162

162) 영국 정부, “Trusts and Inheritance Tax,” <https://www.gov.uk/trusts-taxes/trusts-and-inheritance-tax>, 검색일자: 2020. 8. 14.

163) IHTA 1984 §7(4)

164) IHTA 1984 §8

165) 영국 정부, “Inheritance Tax and excluded property,” <https://www.gov.uk/guidance/trusts-and-inheritance-tax#relevant-property>, 검색일자: 2020. 8. 14

- 유언장으로 신탁이 성립된 경우 이를 'will trust'라고 하며, 고인의 신탁재산 가운데 주택이 포함 되었을 때, 부동산추가비과세(Resident nil Band Rate, RNBR)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유언장신탁(will trust)은 신탁의 법적소유자가 아니어도 신탁재산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남겨진 자산의 보호를 목적으로 함
 - 유언이나 유언신탁이 없는 경우 법률에 의하여 분배되기 때문에 장애인 또는 잠재적으로 치료비용이 필요하거나, 이전 파트너와의 자녀에게 상속하고자 하는 등 특정 상황에 따라 사용할 수 있음
 - RNRB는 직계후손(배우자 또는 동거인)이 사망 후 주택을 상속할 시 고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한 경우 적용되며, 상속세 한도가 높아져 상속세가 면세될 수 있음¹⁶⁶⁾¹⁶⁷⁾
 - 권리소유신탁에 고인의 주택이 포함된 경우 고인의 직계후손은 상속세 추가 상한금액이 적용되며 최대 65만파운드까지 적용됨
 - 이는 배우자 또는 동거인이 사망했을 때 적용되는 기본 면세한도는 첫 번째 사망 시 32만 5천파운드이며,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최대 65만파운드까지 늘어남
 - 이 금액은 매년 증가하며, 2019~2020년 추가금액은 최대 15만파운드임¹⁶⁸⁾

5) 과도기적연속수익(Transitional Serial Interest, TSI)

- 권리소유신탁 수익의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자녀 또는 다른 수익자에게 수익을 전가할 수 있는 과도기적 연속수익이 있음¹⁶⁹⁾
 - 영국 신탁의 수익자 수익처분은 수익자가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수익자가 자본이득세(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으며, 연속수익을 취득한 자는 상속

166) IHTA 1984 §5 (1)

167) IHTA 1984 §8J

168) 영국 정부, "Check if you can get an additional Inheritance Tax threshold," <https://www.gov.uk/guidance/check-if-you-can-get-an-additional-inheritance-tax-threshold>
검색일자: 2020. 8. 14.

169) IHTA 1984 §49

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음¹⁷⁰⁾

- 2006년 3월 22일부터 2008년 10월 5일 이전에는 권리소유신탁의 수익자에게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아, 상속세 과세를 이연하는 효과가 있었음
 - 해당 기간의 권리소유신탁수익자는 자녀 또는 다른 수익자에게 과도기적 연속 수익으로 수익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었음
- 그러나 2008년 10월 5일 이후부터 권리소유신탁의 수익소유권을 가진 경우 과도기적 연속수익으로 수익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음
 - 권리소유신탁의 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 10년마다 20%의 상속세가 부과되도록 개정되어, 기존의 권리소유신탁의 수익소유권과 같이 상속세가 부과됨
- 2006년 3월 22일 이전에 수익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자가 2008년 10월 5일 이후 사망하더라도 사망 전 그의 배우자 또는 「민법」상 파트너로 인정되는 자는 과도기적 연속수익으로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 있음¹⁷¹⁾

라. 유류분제도

- 영국은 과거에는 유언의 자유가 보장되었으나 현대에 들어 유산청구를 허용하고 있음
 - 영국은 1837년 「유언법(Wills Act 1837)」에 따라 유언의 자유가 보장되고, 「유언법」에 따라 고인의 재산을 유증 처분할 수 있고 특정 상속인에게 전 재산을 남기는 것이 허용되었음¹⁷²⁾
 - 그러나 부당한 유언에 대한 구제 조항이 없어 이후 유족유산분여제도가 1938년 「상속법」에 신설되었음¹⁷³⁾
 - 고인이 상속재산을 유언을 통하여 특정인에게 전 재산을 상속한 경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생전 증여분에 대한 청구는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됨¹⁷⁴⁾

170) 김병일·김종해, 2011, p. 167.

171) IHTA1984§49(1),

172) Wills Act 1837 § 3

173) Inheritance (Family Provision) Act 1938

174) 이동진, 『유류분법의 입법론적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9, p. 92.

- 이후 1975년 「상속법(Inheritance Act 1975)」은 상속재산에서 상속 개시 전 6년 이내의 증여에 대하여 ‘합리적(reasonable)인 금액’ 이내에 반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¹⁷⁵⁾
 - 「상속법」상 유류분의 권리자는 배우자 또는 민사동반자, 전 배우자 또는 전 민사동반자, 피상속인의 자녀 등임
 - 합리적인 지급범위는 부양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그 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 법원이 상당한 재량을 갖고 있음
- 2014년 「상속 및 수탁자권한법」은 고인의 재산에 설정된 신탁에 대한 청구권자의 수익권 변경도 가능하도록 조항이 신설되었음¹⁷⁶⁾

2. 미국

가. 미국 신탁제도

- 미국 신탁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음
 - 유언신탁(Testamentary Trust)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설정된 신탁을 말함
 - 유언신탁의 재산은 피상속인의 유산으로 구성되며, 해당 신탁은 영구구속금지의 원칙(The Rule Against Perpetuities)¹⁷⁷⁾이 적용됨
 - 유언신탁은 일반적으로 철회불가능신탁(irrevocable trust)이지만, 1997년 「통일신탁법」을 개정하여 철회가능신탁(revocable trust)을 도입¹⁷⁸⁾함

175) Inheritance(Provision for Family and Dependents) Act 1975§9(13)

176) Inheritance and Trustees' Powers Act of 2014§2.1(h)

177) “영구구속금지의 원칙이란 지정된 수익자가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나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21년 이내에 확정할 수 없는 수익권을 무효로 한다는 의미이다.”(자료: 위키백과, 「영구구속금지의 원칙」, https://ko.wikipedia.org/wiki/%EC%98%81%EA%B5%AC%EA%B5%AC%EC%86%8D%EA%B8%88%EC%A7%80%EC%9D%98_%EC%9B%90%EC%B9%99, 검색일자: 2020. 8. 14.)

178) 철회가능신탁(revocable trust)과 철회불가능신탁(irrevocable trust)의 구분은 신탁자 또는 위탁자가 신탁계약(trust arrangement)을 변경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음. 즉 신탁계약을 변경할 수 있으면 철회가능신탁이고, 그렇지 않으면 철회불가능신탁임.

- 철회가능신탁은 유언대용신탁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나, 그 성격을 살펴보면 유언대용신탁에 가까운 개념이라 볼 수 있음
- 생전신탁(Living Trust Inter Vivos)은 양도자의 생전에 만들어진 신탁을 말함
 - 철회가능신탁(Revocable Living Trust)은 위탁자(truster 또는 grantor)가 신탁 조항을 바꿀 수 있는 신탁으로, 소득세 목적상 신탁자는 신탁된 자산의 소유자로 취급됨
 - 철회불가능신탁(Irrevocable Living Turst)은 위탁자가 신탁 조항을 바꿀 수 없는 신탁으로, 신탁자나 신탁자의 배우자가 생전 신탁의 수탁자인 경우 신탁자는 현재 신탁된 자산의 소유자로 취급됨
 - 철회불가능신탁에서 신탁자는 자산을 신탁하기 전에 했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 소득세 신고서에 신탁 자산으로부터의 수입을 신고해야 함
 - 철회불가능신탁에서 다른 당사자가 수탁자라면, 신탁자가 신탁재산에 의해 발생된 소득세를 납부할 책임은 없으며, 수탁자가 세금 관련 의무를 부담해야 함
 - 위탁자신탁(Grantor Trust)의 위탁자는 주법하에서는 법적 실체이나, 「소득세법」상으로는 별개의 실체가 아니기에 위탁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본인의 세금 보고와 같이 신탁 세금을 보고해야 함
 - 위임신탁(Non-grantor Trust)에서 위탁자는 주법하에서도 「소득세법」상에서도 별개의 실체로 보기에 위탁자가 살아 있어도 신탁수익자는 별도로 세금을 보고해야 함
- 미국 주법상 신탁은 가족신탁(family trust), 사업신탁(business trust), 투자신탁(investment trust)으로 구분됨¹⁷⁹⁾
 - 가족신탁은 위탁자가 수익자를 위하여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보호하고 유지할 목적으로 신탁을 통해 자산을 이전함
 - 사업목적(business objective)을 갖지 않기에 영업 실체가 되지 않는 것으로

179) James M. Peaslee·David Z. Nirenberg, *Federal Income Taxation of Securitization Transactions*, Third Edition, Frank J. Fabozzi Associates, 2001, pp. 170~173.

취급됨

- 사업신탁은 단지 자산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통상회사 또는 파트너십을 통하여 수행되는 이익 창출 활동을 영위하기 위해 설정됨
 - 신탁은 수익자 또는 제3자에 의하여 설정되며 지분권을 가지는 형태를 취하기에 영업 실체가 되는 것으로 취급됨
 - 투자신탁은 신탁에 자산을 직접 출연하거나 전 지분권자로부터 취득하는 방법으로, 수익자가 된 투자자를 위하여 해당 자산을 보유하거나 투자를 행하는 신탁을 말함
 - 수익자를 위해 자산을 보호하고 유지하나 영업을 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가족신탁과 유사함
 - 수익자 스스로 이익을 위하여 투자자로 모인 것이라는 점에서 사업신탁과 구별되기에, 상황에 따라 영업 실체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취급됨
- 미국 「연방세법(IRC)」의 Subchapter J에서는 신탁과 유산(estate)에 대하여 「소득세법」의 내용을 적용하고 있으며, 독특하고 혼합된 형태(hybrid form)의 세제 형태를 취하고 있음
- 신탁이나 유산 과세이론은 도관이론을 적용하지만, 파트너십 등과 같은 패스 스루(pass through)는 아님
 - 신탁을 개별납세의무자로 간주해 수탁자에게 페이 스루(pay through)를 적용하여 위탁자 및 수익자와 분리하여 과세함
 - 단 위탁자신탁은 해당 과세방법이 적용되지 않음
- 이러한 미국 신탁 과세상 가족신탁은 보통신탁으로 불리며, 단순신탁(Simple Trust), 복합신탁(Complex Trust), 위탁자신탁(Grantor Trust)으로 구분됨
- 단순신탁은 수탁자가 예치인으로서 책임만 지는 형태를 말하며, 단순신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함¹⁸⁰⁾

180) Treas. Reg. § 1.651(a)-1.

- 첫째, 현재 신탁소득을 전부 분배해야 함(Distributes all trust income currently)
- 둘째, 신탁이 자선목적에 위해 자금을 출연하거나 이용하지 않거나 영구적으로 유보하지 않아야 함(Does not claim a deduction for charitable contributions for the current year)
- 셋째, 신탁의 원본을 분배하지 않아야 함(Does not make any current distributions out of trust principal)
- 단순신탁의 수익자가 지분 중 일부를 자선단체에 기부한 경우라도 신탁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¹⁸¹⁾
- 복합신탁은 단순신탁이 아닌 모든 신탁¹⁸²⁾을 말함¹⁸³⁾
 - 수탁자의 재량권으로 단순신탁과 달리 신탁소득의 일부를 유보할 수 있음
 - 수탁자의 재량권한의 범위는 「통일신탁법」에서 절대적·무제한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해 표현하고 있으며, 이때 수탁자는 선의의 목적을 가지고 신탁조항에 따라 신탁 목적 및 수익자의 이익에 따라 재량권을 행사하여야 함¹⁸⁴⁾
 - 분배대상의 범위에는 금액, 수탁자의 재량권¹⁸⁵⁾으로 분배할 금액(discretionary distribution)¹⁸⁶⁾의 합계액이 포함됨
 - 분배공제금액은 단순신탁과 동일하게 신탁의 배당가능이익(DNI)을 초과할 수 없음¹⁸⁷⁾
- 위탁자신탁은 신탁자가 자신의 재산을 신탁에 이전하고 이전한 신탁재산에 대하여 위탁자나 제3자¹⁸⁸⁾가 실질적인 권능을 행사하는 형태의 신탁을 말함¹⁸⁹⁾
 - 위탁자신탁 규정에 의해 위탁자는 신탁재산의 운영 및 관리를 통제할 수 있음

181) Technical Advice Memorandum 87388007(1987).

182) 위탁자신탁 제외

183) Treas. Reg. §. 1.661(a) - 1.

184) UTC § 814(a).

185) 수탁자의 재량권한의 범위는 ‘무제한’, ‘유일한’, ‘절대적’ 등의 용어를 포함해 신탁조항에서 수익자에게 부여한 재량권의 범위와 관계없이 수탁자는 선의로(in good faith) 하고, 신탁조항, 신탁 목적 및 수익자의 이익에 따라 재량권을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음(「통일신탁법」(UTC) § 814(a)).

186) 임의적 기부금, 적절하게 지급된 금액, 세액공제, 수년 동안 분배조건인 금액을 말함

187) I.R.C. §§ 661(a) and (c).

188) 신탁자의 특수관계자

189) I.R.C. § 671

- 며, 이를 통해 발생한 신탁소득에 대해서는 위탁자가 납세의무를 지님
- 위탁자는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기에 철회가능신탁¹⁹⁰⁾의 유형으로 사용됨
 - 만약 위탁자가 수익자 변경권을 포기할 경우에는 철회불가능신탁이 됨

〈표 IV-4〉 미국의 과세상 신탁의 분류

구분		내용
보통신탁	단순신탁	• 신탁소득을 모두 수익자에게 분배 • 개인으로 취급
	복합신탁	• 신탁소득 일부만 수익자에게 분배 • 개인으로 취급
	위탁자신탁	• 위탁자가 신탁에 대한 지배권과 통제권 행사 •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취급
사업신탁		• 신탁의 주된 목적이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수행 • 법인 또는 파트너십으로 취급
투자신탁		• 수탁자가 다수의 투자자들을 위해 자산 보유 또는 투자 • 법인 또는 파트너십으로 취급

자료: 이종교, 「신탁 관련 소득과세의 문제점 및 개편방안」, 『세무와 회계 연구』, 제9권 제3호, 한국세무사회부설 한국조세연구소, 2020, p. 110.

- 미국의 위탁자신탁의 대표적 유형은 철회가능신탁으로 우리나라의 유언대용신탁과 가까운 개념을 보이며,¹⁹¹⁾ 미국 「연방세법」(IRC)과 「통일신탁법」(Uniform Trust Code, UTC) 제6편¹⁹²⁾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미국 「연방세법(IRC)」에서 규정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671조부터 제679조에서는 ‘소유자로서 처리(treated as own)’라는 표현을

190) 철회가능신탁은 위탁자에 의해 신탁조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수익자 변경도 가능한 신탁임. 해당 신탁의 수익은 위탁자 생존 중에는 위탁자에게 귀속되고, 위탁자 사망 후에는 수익자에게 이전이 됨. 철회가능신탁은 한 명 이상의 수익자가 신탁계약상 있기에 유언검인을 피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음

191) 명순구·오영길 역, 『현대미국신탁법』, 세창출판사, 2005, p. 118.

192) 「통일신탁법」 제6편 철회가능신탁(revocable trusts)

§601 철회가능신탁상의 신탁자의 능력

§602 철회가능신탁의 철회 또는 변경

§603 신탁자의 권한: 철회 권한

§604 철회가능신탁상의 유효성을 다루기 위한 출소기간: 신탁의 분배

사용하고 있음

- IRC 제671조에서는 위탁자를 신탁소유자로 볼 때, 세법상 소유자의 관점으로 보아 신탁의 수익·공제·세액공제와 관련해 위탁자에게 소득신고 의무가 있다고 간주함
- 즉 신탁 이익 중 위탁자가 받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신탁 자체에 납세의무를 부과함
- 「통일신탁법」(UTC) 제6편에서 규정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신탁 계약 내용에 ‘철회 불가능하다’라는 내용의 신탁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해당 신탁은 철회가능신탁이 됨¹⁹³⁾
 - 신탁 철회가능 기간 내에는 위탁자의 처분에 따라 수익자의 권리가 정해지며, 수익자는 위탁자에게만 의무를 지님¹⁹⁴⁾
 - 해당 신탁의 자산은 위탁자가 생존하고 있을 때는 위탁자가 신탁에 대해 책임을 가지기에, 위탁자가 납세의무를 지님
- 미국의 신탁은 영구구속금지의 원칙(rule against perpetuities)에 의해 위탁자가 사망한 후 21년 이내까지 존속 가능함¹⁹⁵⁾
 - 또한 신탁 설정일로부터 90년 이내에 이전 또는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무효로 보고 있음
 - 일정기간 내에 수익자가 확정되지 않아 원칙을 위반한 신탁의 해당 수익자는 관련 권한을 무효로 간주함

나. 신탁 운영 현황

- 미국의 신탁 운영으로 인한 연간 소득을 살펴보면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09년 급격히 감소한 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193) UTC §602(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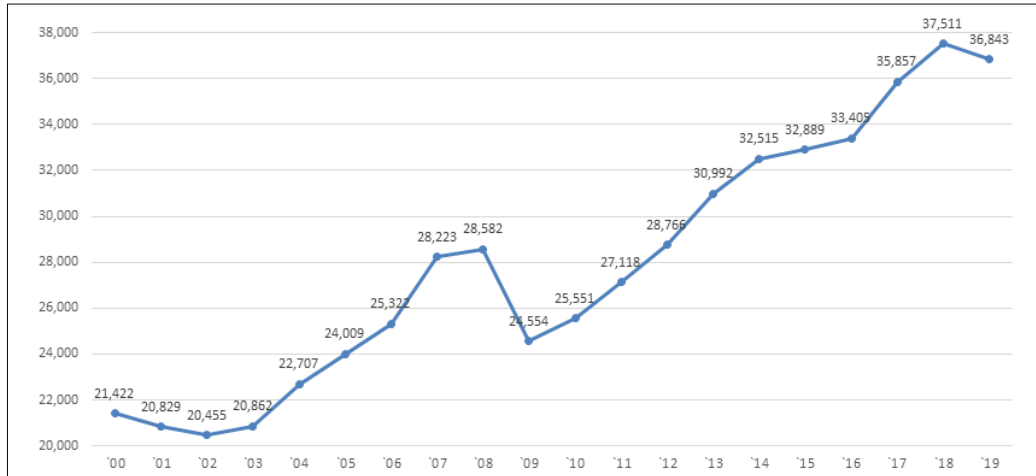
194) UTC §603(a)

195) 미국 Restatement(Second)of Trust §62,comment

- 2009년에 급격히 감소한 것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것으로 추정됨

[그림 IV-3] 연도별 신탁 관련 기관 소득

(단위: 100만달러)



자료: FDIC, “Annual-Imcom”-“fiduciary activities”, https://www7.fdic.gov/idasp/advSearch_warp_download_all.asp?intTab=4, 검색일자: 2020. 8. 19.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2016년 말 기준으로 미국에서는 연방 인가 신탁회사 5,913개사, 주 인가 신탁회사 127개사가 영업하고 있으며, 총 신탁 수탁액은 17.7조달러임
 - 주 인가 신탁회사의 수와 신탁유형별 수탁액은 연방 인가 신탁회사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방 인가 신탁회사의 경우 2016년 말 기준으로 일임형 신탁 수탁액은 4조달러로, 비일임형 신탁의 13.7조달러에 비해 낮은 수준임
 - 비일임형 신탁 수탁액이 2013년 말에 15.8조달러였으나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일임형 신탁 수탁액은 2012년 말 3.4조달러를 보인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일임형 신탁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증가세도 두드러지는 신탁 유형은 투자일임·자문형 신탁으로, 2016년 말 기준으로 1.6조달러임

- 비밀임명 신탁 중에서는 단순보관(custodian)이나 안전보관(safekeeping) 등 자산을 보관하는 신탁이 2016년 말 기준 8.5조달러로 가장 비중이 큼

〈표 IV-5〉 미국의 신탁 유형별 수탁액(2016년 말 기준)

(단위: 십억달러)

구분		연방 인가 신탁회사	주 인가 신탁회사
보고 기관 수		5,913	127
신탁 관련 총 수탁액		17,664	79.0
일 임 명 신탁	개인신탁 및 대리인	633	12.8
	DC형 퇴직연금 관련 신탁 및 대리인	397	2.1
	DB형 퇴직연금 관련 신탁 및 대리인	647	1.4
	기타 퇴직연금 관련 계좌	312	6.1
	기업신탁 및 대리인	20	0.0
	투자일임·자문	1,616	10.2
	재단·기금 신탁 및 대리인	214	2.0
	기타 신탁	116	1.3
	소계	3,956	36.0
	비 일 임 명 신탁	개인신탁 및 대리인	260
DC형 퇴직연금 관련 신탁 및 대리인		2,112	4.4
DB형 퇴직연금 관련 신탁 및 대리인		4,188	4.8
기타 퇴직연금 관련 계좌		1,304	2.6
기업신탁 및 대리인		2,594	25.9
투자일임·자문		181	0.2
재단·기금 신탁 및 대리인		246	0.3
기타 신탁		2,824	0.4
단순보관·안전보관		85,357	25.5
소계		13,709	43.1

자료: 자본시장연구원·금융연구원·보험연구원, 2017, p. 258.

다. 신탁 과세 현황

1) 일반원칙

- 신탁과세의 일반원칙은 유산(estate)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위탁자신탁을 제외한 모든 신탁에 적용됨
 - 신탁은 개별납세의무자로서 위탁자 및 수익자와 분리된 개별납세 실체로 간주함
 - 신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가짐
 - 「개인소득세법」 규정이 적용되고, 이때 납부세액은 Form 1041에 의해 산정됨
 - 신탁에서 분배된 소득은 수익자가 소유한 소득의 성격과 동일하게 보아, 유형에 따라 과세함
 - 신탁의 과세소득은 개인 과세소득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산정되며, 해당 부분에 대해 달리 규정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산정함¹⁹⁶⁾
 - IRC 제641조부터 제683조에 따라 개인 납세자와 달리 적용할 규정을 제시하지 않으면 신탁 과세대상은 개인 납세자와 동일하게 적용됨
 - 단 주정부와 지방정부에서 특정 규정을 가지지 않는 경우, 주정부나 지방정부는 주세법과 지방세법에서 개인과 동일한 공제사항을 적용할 수 있음

- 미국 「연방소득세법」상 신탁에 대한 일반적인 과세 원칙은 개인에게 적용되는 세율¹⁹⁷⁾을 신탁에 적용하여, 수익자에게 배분 또는 귀속시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 과세하는 것임¹⁹⁸⁾

196) I.R.C. §641(b)

197)

〈2020년 연방소득세율〉

(단위: 달러, %)

과세소득	세율	과세소득	세율
0~2,600	10	9,451~12,950	35
2,601~9,450	24	12,951~12,951	37

198) I.R.C. subchapter J의 Part I 중 subpart E를 제외한 부분임

- 수익자에게 배분 또는 귀속된 부분을 과세함
- 신탁과세 시 개인에게 적용되는 연방세율의 최고세율은 2020년의 경우 37%임
- 위탁자신탁에 속하지 않는 신탁의 수익자가 자녀투자소득세(kiddie tax)¹⁹⁹⁾가 부과되지 않는 성인인 경우, 신탁에서 발생한 투자소득을 낮은 세율구간의 납세의무자에게 이전 가능할 여지가 생김

2) 상속 및 증여세

- 증여세는 증여자에게 부과²⁰⁰⁾되며, 만약 증여세를 납부하지 못하면 수증자는 받은 자산가액 범위 내에서 증여세를 부담해야 함²⁰¹⁾
 - 증여세는 과세 가능한 증여자산가액²⁰²⁾에서 통합세율(unified tax rate)을 곱해 산출함
- 피상속인 사망 시 부과되는 상속세 과세유형에는 유산세 방식(estate)과 유산취득세 방식(inheritance)이 있음²⁰³⁾
 - 유산세 방식은 다음과 같은 형식을 취함

199) 자녀투자소득세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스스로 취득하지 않은 배당 및 이자와 같은 순소득을 부모의 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함. 또한 자녀가 가득한 소득이 지원받는 금액의 1/2을 초과하지 않은 상태이고, 자녀가 19세 미만이라는 조건을 충족하거나 19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24세 미만으로서 전업학생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적용됨. 2020년 기준 대부분의 납세자에게 최대 15%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과세소득 구간이 37%에 속할 경우 20%의 세율이 적용됨. (form 8615, Topic No. 553; IRS(미국 국세청), "Tax on a Child's Investment and Other Unearned Income(Kiddie Tax)," <https://www.irs.gov/taxtopics/tc553>, 검색일자: 2020. 8. 13.)

200) I.R.C. §2502(c)

201) I.R.C. §6324(b)

202) taxable gift라고 하며, 증여재산가액 전체에서 각종 공제(deduction)와 증여세 면세한도(annual exclusion)를 제한 것을 말함

203) William H. Hoffman, Jr., William A. Laabe, James E. Smith, David M. Maloney, *South-Western Federal Taxation: Corporations, Partnership, Estates & Trusts*, 2020 Edition, SOUTH-WESTERN, 2020, p. 18-3; p. 18-4.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되고, 피상속인 사망 시 상속재산을 이전시킬 수 있는 권리에 부과하는 형식을 취함
- 배우자공제(marital deduction)를 받는 생존배우자에 대한 이전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에 대한 친족관계 친소 여부는 영향이 없음
- 유산취득세 방식은 다음과 형식을 취함
 - 상속인이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상속세가 부과되기에 상속세는 상속인에게 부과됨
 -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관계가 가까운 경우 소득공제액이 크고 적용세율이 유산세방식보다 낮음
- 상속세의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음
 - 납부할 상속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음
 - 총 상속재산에서 각종 공제를 한 과세가능 상속재산(taxable estate)에 과세가능 증여재산(taxable gift)을 더한 것이 과세표준이 됨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것이 잠정과세액(tentative tax)이 되고, 이후 통합세액공제(unified tax credit)²⁰⁴ 등 각종 세액공제를 제외하면 납부할 상속세(estate tax due)가 됨

3) 위탁자신탁 및 철회가능신탁

- 위탁자 신탁은 위탁자신탁 규정(grantor trust rules)에 따라 과세됨²⁰⁵
 - 해당 규정은 신탁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을 분산시켜 기존의 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됨
 - 위탁자와 제3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권한을 가지거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204) 통합세액공제의 도입 목적은 증여자와 피상속인이 증여세 또는 상속세 부담 없이 적정 수준의 부를 이전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한 것임. 해당 공제는 2010년 상속세에서는 폐지되었다가 2011년에 부활함. 2020년 기준 통합세액공제는 1,158만달러임(자료: Rev. Proc. 2019-44).

205) I.R.C. §§ 671-679

경우, 위탁자와 제3자를 해당 신탁재산의 소유자로 간주해 과세함²⁰⁶⁾

- 위탁자와 제3자는 해당 신탁재산을 자신의 소득으로 신고하고, 각각에 대해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음²⁰⁷⁾
 - 수탁자가 신탁소득을 수익자에게 분배 또는 유보할지라도 실질적 신탁소득 귀속자는 위탁자 및 제3자에 귀속되기 때문임

- 철회가능신탁의 경우, 위탁자 생존 중에는 위탁자에게 신탁이익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여하며 신탁재산의 유형에 따라 과세하고, 위탁자 사망 후에는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이 이전되는 시점에 상속세(estate tax)를 부과함

4) 자산의 상속 및 증여에 따른 소득세

- 생전 증여의 경우 수증자의 소득에 포함되지 않음²⁰⁸⁾
 - 수증자는 증여자의 장부가액을 승계하되 시가가 장부가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시가로 승계함²⁰⁹⁾
- 상속의 경우 수증자의 소득에 포함되지 않음²¹⁰⁾
 - 2009년 12월 31일 이후에는 상속재산의 장부가액은 피상속인의 장부가액과 사망일 현재의 공정가액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장부가액 수정이 가능함²¹¹⁾
 - 상속 당시 피상속인 단계에서 가치가 상승한 자산은 130만달러까지 증액 가능함
 - 생존배우자가 있는 경우 300만달러까지 증액 가능함
 - 투자 자산에 미실현손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증액 가능함
 - 상속인의 상속자산이 순차 상속되는 경우 130만달러까지 추가 증액 가능함

206) I.R.C §§ 673-679

207) I.R.C §671

208) I.R.C. §102(a)

209) I.R.C. §1015

210) I.R.C. §1014

211) I.R.C. §1022

- 장부가액 수정과 관련해 자녀가 사망이 임박한 부모에게 자산을 증여하고 증여 후 3년 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그 자녀는 이상과 같이 장부가액이 증액 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음(gift within 3 years of death exception)²¹²⁾

5) 세대생략이전과세(Generation-Skipping Transfer Tax, GSTT)²¹³⁾

- 1976년, 세대를 건너뛰고 상속되는 유산신탁 또한 신탁기금(estate trust)에 대하여 권리(interest or life estate)나 잔여권(remainder interest)을 가진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도입됨²¹⁴⁾
 - 세대생략 인수인(skip person)에게 부과되며 인수인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됨
 - 인도인으로부터 2세대 이상 아래인 세대에 속한 개인
 - 신탁재산이 세대생략 인수인들 의해 보유되거나 세대생략 인수인만 신탁으로부터 분배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세대를 생략한 자산 이전에 대해 최고세율로 상속세를 과세하고, 분배되는 신탁 이익에 대해 과세하여 신탁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기능을 함
- 세대생략이전과세의 유형에는 과세 신탁종료(taxable termination), 과세 분배(taxable distributions), 직접적 세대생략 이전(direct skip)이 있음²¹⁵⁾
 - 과세 신탁종료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신탁종료를 의미함
 - 신탁 종료 후 세대생략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는 이가 수익권을 갖는 경우
 - 신탁 종료 후 세대생략 인수인에게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과세 분배는 다음의 경우를 의미함
 - 직접적 세대생략이전 또는 과세 신탁종료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생략 인수인에

212) I.R.C. §1022(d)(1)(C)(i)

213) I.R.C. §§ 2601-2663

214) 김종해·박창덕·김병일, 2019, p. 93.

215) I.R.C. §2612

대한 신탁으로의 분배를 의미함

- 직접적 세대생략이전은 다음의 경우를 의미함
 -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가 상속세가 부과되는 세대생략 인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의미함
 - 위탁자가 생전신탁에 대한 수익권을 제2차 인수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신탁에 대한 직접적 세대생략이전으로 간주해 세대생략이전과세가 부과됨
 - 세대생략 인수인의 부모가 이전 당시 사망한 경우에는 직접적 세대생략 이전에 대해 세대생략이전과세가 부과되지 않음

- 세대생략이전과세는 세대생략이전의 유형별로 과세표준, 세액 계산 및 납세의무자가 달라짐
 - 과세 신탁종료의 경우 다음과 같이 과세표준, 세액 계산 및 납세의무자가 결정됨²¹⁶⁾
 - 신탁종료 후 신탁재산의 가치에서 비용·채무·세금 등에 대한 공제항목²¹⁷⁾을 제한 것을 신탁의 과세표준으로 정함
 - 수탁자가 신탁과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님
 - 과세 분배의 경우 다음과 같이 과세표준, 세액 계산 및 납세의무자가 결정됨²¹⁸⁾
 - 수령인이 분배받는 재산의 가치에서 해당 분배와 관련된 세대생략이전과세를 결정, 징수 및 환급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공제한 것을 신탁의 과세표준으로 정함
 - 분배받는 수령인이 신탁과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님
 - 만약 세금이 신탁재산으로부터 납부되었다면 해당 금액을 또 다른 분배로 간주해 과세함
 - 직접적 세대생략이전의 경우 다음과 같이 과세표준, 세액 계산 및 납세의무자가 결정됨²¹⁹⁾
 - 인수인이 받은 재산의 가치를 과세표준으로 정함

216) I.R.C. §2622, I.R.C. §2603(a)(2)

217) IRC §2053

218) IRC §2621(a), (b), IRC §2603(a)

219) IRC §2623, IRC §2603(a)

- 세대생략이전과세는 인도인이 신탁과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니지만, 만약 신탁을 경유한 경우에는 수탁자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님
- 직접적 세대생략 등에 있어서 증여금액은 과세대상으로서 증여자인 인도인이 납부한 세대생략이전과세만큼 증가됨

- 세대생략이전과세 세율은 피상속인의 유산에 적용되는 최대 유산세율과 동일한 고정 세율로 부과되며, 상속 및 증여에 적용되는 공제액과 동일하게 적용됨
 - 2020년 기준 세대생략이전과세 세율은 40%가 됨
 - 2020년 기준 세대생략이전과세 공제금액은 1,158만달러임

라. 유류분제도²²⁰⁾

- 영미법에서는 유류분제도를 두고 있지 않는 대신 다른 제도가 유류분제도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으며, 제도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
 - 유족부양청구권 제도(family allowance)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부양을 필요로 하는 자가 발생한 경우, 상속재산관리 절차 중 유족이 법원에 상속재산으로부터 부양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통일유언검인법(Uniform Probate Code)」은 피상속인이 부양의무를 지고 있었던 생존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그리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고 있었던 자녀들은 상속재산관리 기간 동안 상속재산으로부터 부양을 위한 금전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²²¹⁾
 - 부부별산제²²²⁾상의 강제지분제도(forced share)는 사망한 배우자의 입장에서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재산 중 일부분을 생존배우자에게 강제 유보하는 제도임
 - 유언자의 유언의 자유를 제한하고 생존배우자에게 유언자의 상속재산 일부를

220) 한소혜,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유류분 제도의 개선방안 - 영국, 미국 사례로부터의 시사점을 포함하여」, 『외법논집』, 제43권 제2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pp. 60~65.

221) 「통일유언검인법(Uniform Probate Code)」 §2-404(a)

222) 미국의 대부분의 주에서는 보통법의 영향으로 부부별산제를 택하고 있음

분배한다는 점에서 유류분제도와 유사함

- 부부공동재산제²²³⁾상의 유류분제도는 다음과 같음
 - 이혼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기간 중 취득한 재산 중 1/2을 분할받을 권리를 가짐
 -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1/2의 상속분을 받음
- 「통일유언검인법(Uniform Probate Code)」²²⁴⁾상의 선택지분제도(elective share)는 다음과 같음
 - 상속의 효력 발생 시 부부의 총재산에 혼인존속기간에 따라 정해진 비율²²⁵⁾을 곱한 후, 그중 1/2을 생존배우자가 선택지분으로 받을 수 있음²²⁶⁾

223) 미국의 일부 주는 대륙법 체계를 채택함. 해당하는 주는 다음과 같으며, 이들 주는 부부공동재산제를 채택하고 있음. 네바다, 뉴멕시코, 루이지애나, 애리조나, 아이다호, 위스콘신, 워싱턴, 텍사스, 캘리포니아 등

224) 「통일유언검인법(Uniform Probate Code)」은 각 주마다 다양한 형태를 택하고 있는 미국 상속법을 통일하기 위해 국가통일법위원회협의회(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 on Uniform State Laws)에서 1969년 최초로 제정한 법이지만, 사회상이 변하며 1990년에 기존의 법정상속 제도 및 생존배우자의 선택지분(elective share) 제도를 대폭 개정하였음

225) 최소 3%(혼인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부터 최대 100%(혼인기간 15년 이상인 경우)까지이며, 혼인 후 첫 2년을 제외하고는 혼인기간이 1년 증가할 때마다 그 비율도 6% 또는 8% 증가하도록 설계되어 있음(자료: UPC §2-203(b) Alternative B)

〈1990년 통일검인법상 선택지분율〉

(단위: %)

혼인기간	선택지분	혼인기간	선택지분
1년 미만	선택지분 주장 못함 / 보완금액 5만달러 지급	8~9	24
1~2년	3	9~10	27
2~3	6	10~11	30
3~4	9	11~12	34
4~5	12	12~13	38
5~6	15	13~14	42
6~7	18	14~15	46
7~8	21	15년 이상	50

자료: UPC §2-203(b) Alternative B

226) UPC §2-202(b)

- 2008년 개정을 통해 생존배우자의 선택지분이 50%임을 명확하게 제시함²²⁷⁾
- 선택지분 계산 시 부부의 총재산에 상속 효력 발생 시 피상속인 소유 재산, 생존배우자 소유 재산, 피상속인이 제3자²²⁸⁾나 생존배우자에게 생전 처분²²⁹⁾한 재산, 생존배우자가 제3자에게 생전 처분²³⁰⁾한 재산까지 모두 포함함²³¹⁾
- 재산의 규모에 따라 생존배우자가 부양에 따른 필요에 비해 지나치게 적거나 많은 재산을 받아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 마련함²³²⁾
- 선택지분에 의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7만 5천달러²³³⁾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 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보충적 선택지분(supplemental elective share)을 주장할 수 있음²³⁴⁾

3. 일본

가. 일본 신탁제도

- 일본의 개정신탁은 과세상 수익자 등 과세신탁, 집단신탁, 법인과세신탁 등 세 가지로 구분함²³⁵⁾
- 수익자 등 과세신탁은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을 수익자의 소득으로 과세하는 신탁을 말함²³⁶⁾²³⁷⁾²³⁸⁾

227) UPC, Part 2. General Comment

228) UPC §2-205

229) UPC §2-206

230) UPC §2-208

231) UPC §2-203(a)

232) UPC, Part 2. General Comment

233) UPC, Part 2. Section 2-202 Comment

234) UPC §2-202(b)

235) 이종교, 2020, pp. 114~117.

236) 일본 「소득세법」 제13조 제1항

237) 위탁자가 간주수익자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위탁자 이외의 자도 간주수익자가 될 수 있음

- 신탁은 과세상 없는 것으로 보고,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을 수익자의 소득으로 봄
 - 재산의 관리나 처분을 하는 신탁이 수익자 등 과세신탁에 해당됨
 - 신탁재산에 포함되는 자산과 부채는 수익자 등이 가지는 것으로 보아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수익과 비용을 수익자 등의 수익 및 비용으로 간주해 세법의 규정을 적용함²³⁹⁾
 - 신탁변경 권한을 인정하기에 당해 신탁재산의 수익을 받는 자를 수익자로 간주함²⁴⁰⁾
- 집단신탁은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을 수익자의 소득으로 보되, 이를 실제로 수령한 단계에서 과세하는 신탁을 말함²⁴¹⁾²⁴²⁾
- 수익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점에서는 수익자 등 과세신탁과 같으나, 신탁소득을 수령하는 시점에 과세하는 점에서 수익자 등 과세신탁과 차이가 있음
 - 수익자가 다수인 것으로 인해 소득 발생단계에서 수익의 귀속을 가리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수익자 등 과세신탁과 별도로 집단신탁을 인정하고 있음
 - 수익자가 다수인 경우에 적용되어 각각의 수익자가 수익을 수령할 시 과세하기에, 수익자 등 과세신탁에 비해 과세이연 효과가 있음
 - 이 점에서 우리나라의 적격투자신탁과 비슷함
 - 단 특정수익증권발행신탁의 경우, 이익계산기간이 1년 이하일 것 등 과세이연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요건을 엄격히 정해 놓음
- 법인과세신탁은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법인세를 과세하는 신탁을 말함²⁴³⁾²⁴⁴⁾
- 수익자 부존재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법인이 위탁자인 특정신탁, 투자신탁, 특

238) 이종교, 2020, p. 115.

239) 일본 「법인세법」 제12조 제1항 등

240) 일본 「법인세법」 제12조 제1조 제2항

241) 일본 「소득세법」 제13조 제1항, 이러한 성질로 인해 “수령 시 신탁”이라고도 부른다.

242) 이종교, 2020, pp. 115~116.

243) 일본 「법인세법」 제4조의6·7; 제2조 제29호의2

244) 이종교, 2020, p. 116.

정목적신탁 등에 대하여 적용됨

- 투자신탁, 특정목적신탁의 경우에는 수탁자의 소득을 계산할 시 출자자 등에 대한 분배금을 공제함
- 법인과세신탁은 각 신탁별로 그 취지가 다소 다름
 - 수익증권발행신탁, 투자신탁, 특정목적신탁 등은 법인과세의 조세 중립성을 위한 것임
 - 수익자부존재신탁은 수익자에게 과세할 수 없어서 수탁자에게 과세하는 것임
 - 법인이 위탁자인 특정신탁은 자기신탁을 통하여 과세이연 등의 조세회피를 시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표 IV-6〉 일본의 과세상 신탁의 분류

구분	납세의무자	과세시기	적용대상
수익자 등 과세신탁	수익자	수익 발생 시	일반신탁
집단신탁	수익자	수익 수령 시	집단투자신탁(합동운용신탁, 국내공모투자신탁, 외국투자신탁, 특정수익증권발행신탁), 퇴직연금동신탁 등
법인과세신탁	수익자	수익의 법인 귀속 시	수익자부존재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법인이 위탁자인 특정신탁, 투자신탁, 특정목적신탁

자료: 이종교, 2020, p. 117.

- 신탁 중 개인신탁은 크게 자산의 승계·상속을 위한 신탁과 자산의 형성·자산운용을 위한 신탁으로 나뉨²⁴⁵⁾
 - 자산의 승계·상속을 위한 신탁(資産承継・相続のための信託)은 다음과 같이 세부적으로 구분됨
 - 교육자금 증여신탁(教育資金贈与信託)
 - 결혼 및 육아지원 신탁(結婚・子育て支援信託)
 - 생명보험 신탁(生命保険信託)

245) 일본 신탁협회, 「個人のための信託」, <https://www.shintaku-kyokai.or.jp/products/individual/>, 검색일자: 2020. 8. 19.

- 유언신탁(遺言信託)
- 유언대용신탁(遺言代用信託)
- 후계 유증형 수익자연속신탁(後継ぎ遺贈型の受益者連続信託)
- 자산의 형성·자산운용을 위한 신탁(資産形成・資産運用のための信託)은 다음과 같이 세부적으로 구분됨
 - 금전신탁(金銭信託)
 - 투자신탁(投資信託)
 - 연금신탁(年金信託)
 - 재산형성신탁(財産形成信託)
 - 부동산신탁 및 부동산 관련 업무(不動産の信託・不動産業務)
- 자산의 승계·상속을 위한 신탁(資産承継・相続のための信託)에 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²⁴⁶⁾
 - 교육자금 증여신탁(教育資金贈与信託)은 부모 또는 조부모가 자녀 또는 손자의 교육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설정하는 신탁임²⁴⁷⁾
 - 해당 신탁의 위탁자는 수익자의 직계존속으로 제한되며, 수익자는 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날 30세 미만의 개인이며 전년의 총소득액이 1천만엔 이하인 경우로 제한됨
 - 해당 신탁 자금의 용도는 교육자금으로 한정되어 있기에 증여세를 과세받지 않고, 교육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탁은행 등에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함

246) 일본 신탁협회, 「個人のための信託」, <https://www.shintaku-kyokai.or.jp/products/individual/>, 검색일자: 2020. 8. 19.

247) 해당 신탁의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음

1. 계약은 신탁 관련 업종 통합하여 1개까지 계약 가능함
2. 교육자금으로 사용되지 않은 자금은 증여세가 과세됨
3. 한 번 계약하면 해지가 불가능함
4. 수탁자가 해당 신탁 운용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은 수익자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수익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됨
5. 신탁 기간 동안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 위탁자의 상속 개시 전 3년 이내 설정된 신탁금액에서 교육자금으로 사용된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됨

*단, 위탁자 사망 시 수익자가 23세 미만인 경우, 학교 재학생인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른 교육훈련지급금의 대상이 되는 교육훈련을 수강하고 있는 경우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음

- 해당 신탁은 1,500만엔을 한도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 결혼 및 육아지원신탁(結婚·子育て支援信託)은 부모 또는 조부모가 자녀 또는 손자의 결혼·출산·육아 관련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신탁임²⁴⁸⁾
 - 해당 신탁의 위탁자는 수익자의 직계존속으로 제한되며, 수익자는 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날 20세 이상 50세 미만의 개인이며 전년의 총소득액이 1천만엔 이하인 경우로 제한됨
 - 해당 신탁의 자금의 용도는 결혼·출산·육아 관련 자금으로 한정되어 있기에 증여세를 과세받지 않고,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탁은행 등에 관련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함
 - 해당 신탁은 1천만엔을 한도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 생명보험 신탁(生命保險信託)은 위탁자의 사망 전 생명보험금의 수취인이 받게 될 보험금을 생전에 지급방법을 정하거나, 해당 보험금을 수취인을 대신해 관리 및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신탁임
 - 위탁자의 사망 이후 수혜자를 차례로 지정하거나 수익자를 지정해 해당 수익자가 사망하거나 자산이 소진된 경우 신탁을 종료할 수 있음
- 유언신탁(遺言信託)은 신탁은행 등이 위탁자의 유언서 작성·보관·집행을 진행해주는 것을 계약하는 신탁임
 - 해당 신탁을 통해 복잡한 상속절차를 대신 처리해 주거나 상속인 간의 문제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음
 - 단 이때 유언서는 공증을 받은 유언서에 대해서만 진행이 가능함
- 유언대용신탁(遺言代用信託)은 위탁자 생전에는 본인을 수익자로 하여 재산관리 및 운용을 위탁자가 하고, 위탁자 사망 후 남겨진 가족의 생활을 걱정하거나 기

248) 해당 신탁의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음

1. 계약은 신탁 관련 업종 통합하여 1개까지 계약 가능함
2.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자금으로 사용되지 않은 자금은 증여세가 과세됨
3. 한 번 계약하면 해지가 불가능함
4. 수탁자가 해당 신탁 운용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은 수익자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수익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됨
5. 신탁 기간 동안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 결혼·출산·육아 관련 자금으로 사용된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됨

업승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신탁임

- 위탁자 생존 당시 신탁 계약을 통해 수익자, 재산분배 방법, 분배 시기 등을 지정 가능함
- 더불어 수익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수익자를 대신하여 신탁재산을 관리 및 운용하다가 계약에서 지정한 시점이 되었을 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함
- 이 경우 유류분을 침해하는 신탁 설정은 불가능함

- 후계 유증형 수익자연속신탁(後継ぎ遺贈型の受益者連続信託)은 여러 세대에 걸쳐 신탁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형태의 신탁임
 - 해당 신탁은 여러 세대에 걸쳐 신탁재산의 승계가 가능해 기업승계 등에 유용하게 이용 가능함
 - 단 신탁재산을 승계할 수 있는 수익자의 범위에 제한이 있음
 - 여러 세대에 걸쳐 승계된 신탁재산은 유류분 감쇄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일본 「신신탁법」 제90조²⁴⁹⁾는 유언대용신탁이란 용어를 쓰지는 않지만 법령은 유언대용신탁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두 가지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음

- 많은 일본 문헌에서 제90조 제1항의 첫 번째 규정을 제1유형, 두 번째 규정을 제2유형으로 칭하고 있음

□ 일본 「신신탁법」 제91조²⁵⁰⁾는 수익자연속신탁이란 용어를 쓰지는 않지만 법령은

249) 일본 「신신탁법」 제90조[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취지의 정함이 있는 신탁 등의 특례]

1. 다음 각 호에 든 신탁에 있어서, 당해 각호의 위탁자는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갖는다. 단 신탁행위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정함에 의한다.
 - (1) 위탁자의 사망 시 수익자가 될 자로서 지정된 자가 수익권을 취득하는 취지의 정함이 있는 신탁
 - (2)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수익자가 신탁재산에 관한 급부를 받는 취지의 정함이 있는 신탁
2. 전항 제2호의 수익자는 동호의 위탁자가 사망하기까지는 수익자로서의 권리를 갖지 않는다. 단 신탁행위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정함에 의한다.

자료: 최수정, 『일본신신탁법』, 진원사, 2007, p. 276.

250) 일본 「신신탁법」 제91조[수익자의 사망에 의해 다른 자가 새로이 수익권을 취득하는 취지의 정함이 있는 신탁의 특례] 수익자의 사망에 의해 당해 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이 소멸하고 다른 자

수익자연속신탁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수익자연속신탁은 수익자가 사망하였을 때 당해 수익권이 소멸하고, 이후 순차적으로 수익권이 이전되는 형태를 가짐
- 일본도 일반 신탁에는 존속기간 제한이 없으나 수익자연속신탁에 한하여 신탁 존속기간을 30년으로 제한하고 있음²⁵¹⁾
 - 신탁 설정 시점으로부터 30년이 되는 시점에 생존해 있는 수익자가 신탁 설정에 의해 수익권을 취득하면, 해당 수익자가 사망하거나 수익권의 효력이 소멸하기 전까지 수익권의 소유는 해당 수익자가 됨
- 일본의 수익자연속신탁을 통한 세대생략이전과세는 일본 「상속세법」상²⁵²⁾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 이외의 사람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 산출한 상속세액에 20%를 가산해 과세함²⁵³⁾
 - 일본의 수익자연속신탁은 신탁이익을 신탁원본과 수익으로 분리해 세대생략이전이 가능한 형태를 가지며, 연속수익자에 대해 상속 이외의 자산 이전 기간 제한 규정도 허용함
- 세대생략이전과세와 관련한 일본의 세법상 혈족에 대한 범위는 다음과 같음
 - 1촌 등 혈족에 포함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에 해당하면 상속세 가산규정

가 새로이 수익권을 취득하는 취지의 정함(수익자의 사망에 의해 순차적으로 다른 자가 수익권을 취득하는 취지의 정함을 포함한다)이 있는 신탁은 당해 신탁이 설정된 때부터 30년을 경과한 이후에 현존하는 수익자가 당해 정함에 의해 수익권을 취득한 경우 당해 수익자가 사망하기까지 또는 당해 수익권이 소멸하기까지 그 효력을 갖는다(자료: 최수정, 2007, p. 276.).

251) 일본 「신신탁법」 제91조

252) 상속세 총액 산정 시 유산총액 및 상속인의 수, 그리고 법정상속분에 따라 산정됨. 각 상속인의 납부세액 산정 시 상속세의 총액을 실 상속인이 상속받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해당 산출세액으로부터 개인 사정을 고려한 세액공제 등이 이루어진 후 각자의 산출세액이 산출됨(자료: 川上尙貴 編著, 『圖說日本の税制』, 財經詳報社, 2008, p. 148; 일본 국세청, 「相続税の計算」,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ozoku/4152.htm>, 검색일자: 2020. 8. 19.).

253)金子宏, 『租税法』, 弘文堂, 2017, p. 643; 일본 국세청, 「相続税額の2割加算」,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ozoku/4157.htm>, 검색일자: 2020. 8. 19.

이 적용되지 않음²⁵⁴⁾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상속 개시 이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권을 잃어버림으로 인해 상속인이 된 피상속인²⁵⁵⁾

- 양자를 입양하기 전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없는 상태에서 직계비속이 아닌 자가 양자로 된 경우

○ 혈족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²⁵⁶⁾

- 대습 상속인을 제외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타인의 양자가 된 경우²⁵⁷⁾

○ 유증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혈족이 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에 해당하면 상속세 가산규정이 적용되지 않음²⁵⁸⁾

- 상속 포기 또는 상속 자격 결격 또는 상속 자격 박탈 등의 사유에 의해 상속권을 잃은 자²⁵⁹⁾가 유증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경우

나. 신탁 운영 현황

□ 일본의 신탁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부터 2020년 3월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일본의 신탁의 종류를 크게 분류하면 자산운용형, 자산관리형, 자산유동화형, 그 외 신탁으로 구분됨

254) 일본 국세청, 「相続人の中に養子がいるとき」,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ozoku/4170.htm>, 검색일자: 2020. 8. 19.

255) 일본 「상속세법」 기본통달 18-4

256) 일본 「상속세법」 제18조 제2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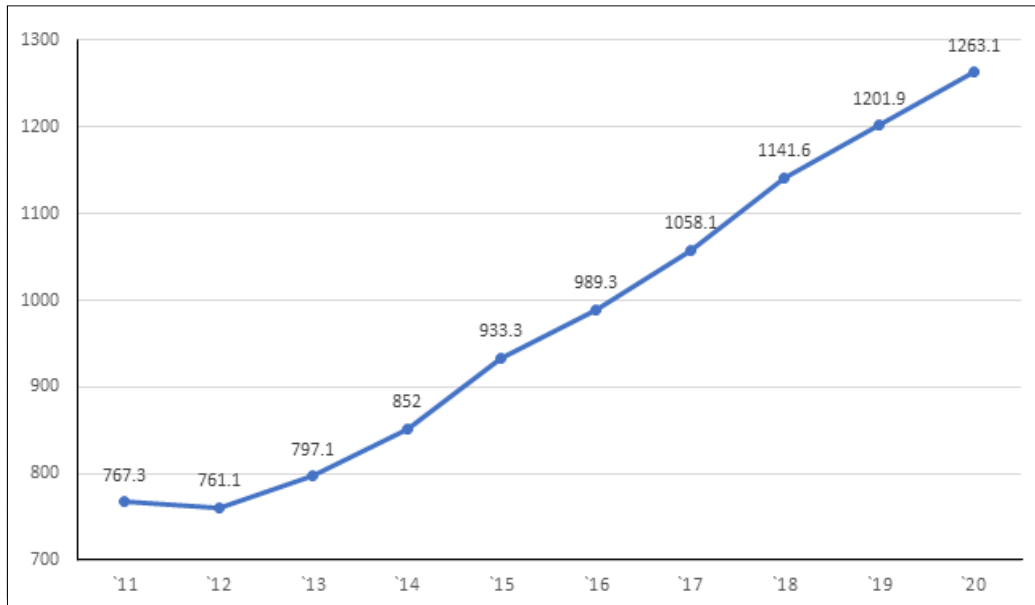
257) 해당 경우의 피상속인의 양자는 세대생략이전신탁의 수익자가 될 수 있음

258) 일본 「상속세법」 기본통달 18-1

259) 일본 「상속세법」 제18조의 1촌 등의 혈족에 속하는 경우에 한함

[그림 IV-4] 일본 연도별 신탁 추이

(단위: 조엔)



주: 해당 자료는 매년 3월 말 기준으로 작성됨

자료: 일본 신탁협회, 「信託の受託概況」(2013~2020년 각 3월 자료 이용), <https://www.shintaku-k yokai.or.jp/data/trust/>, 검색일자: 2020. 8. 19.

- 일본에서 운용되는 신탁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자산운용형 신탁은 수탁자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는 형태임
 - 자산관리형 신탁은 수탁자가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산을 관리하는 형태임
 - 자산유동화형 신탁은 신탁재산의 유동화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초자산 보유자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이용되는 형태임
 - 그 외 신탁은 이상의 형태를 제외한 나머지 신탁을 말함

- 신탁 종류별 수탁현황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특히 자산관리형 신탁은 2011년 대비 2020년 3월에 약 1.7배 증가한 수치를 보임

〈표 IV-7〉 일본 신탁 종류별·연도별 수탁 현황

(단위: 조엔)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자산 이용 형	금전	26.8	29.0	27.6	28.9	30.7	33.4	28.3	31.3	39.3	36.0
	연금	34.8	33.8	35.8	40.0	42.0	40.0	35.4	32.5	31.8	31.3
	금전 외	1.6	2.2	1.5	1.7	1.9	1.6	1.5	1.7	1.8	2.0
	유가증권	43.8	48.9	53.3	45.3	48.6	44.9	46.2	45.5	44.7	49.8
	기타	3.5	3.4	3.3	3.1	3.5	3.3	3.1	2.9	5.7	5.5
	소계	110.7	116.9	121.9	119.3	127.0	123.5	114.7	114.0	123.5	124.8
자산 관리 형	금전	96.7	93.9	95.7	95.6	88.6	92.7	98.1	94.1	85.9	79.2
	연금	43.0	42.6	42.0	43.2	44.9	45.6	45.9	49.3	50.2	52.5
	투자	106.1	103.0	111.1	124.3	144.7	166.5	181.6	201.5	209.8	223.9
	금전 외	9.9	10.2	12.0	14.8	17.6	20.7	26.6	33.0	39.7	47.4
	위탁관리	252.4	245.3	261.8	293.9	326.3	347.0	370.6	408.7	438.0	465.8
	기타	66.4	66.3	69.9	78.5	98.0	105.8	115.1	123.0	129.7	134.8
소계	574.8	561.6	592.7	650.5	720.4	778.4	838.2	910.0	953.7	1004.0	
자산 유동 화형	금전채권	34.5	34.4	32.5	31.1	31.8	31.8	33.0	33.6	36.5	41.7
	부동산	24.9	24.9	25.3	26.4	29.5	32.1	34.5	37.4	40.3	44.6
	소계	59.9	60.0	58.5	58.3	62.4	65.1	69.7	73.7	80.5	91.1
그외	21.7	22.5	24.0	23.8	23.3	22.2	35.3	43.7	44.0	43.2	
총신탁계	767.3	761.1	797.1	852.0	933.3	989.3	1058.1	1141.6	1201.9	1263.1	

주: 해당 자료는 매년 3월 말 기준으로 작성됨
 자료: 일본 신탁협회, 「信託の受託概況」(2013~2020년 각 3월 자료 이용), <https://www.shintaku-kyokai.or.jp/data/trust/>, 검색일자: 2020. 8. 19.

- 일본에서는 유언서를 통해 재산 승계 및 상속을 하는 유언신탁의 경우, 신탁 관련 업체를 통해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며, 해당 업체에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대행함
 - 업체는 유언서 보관, 유언서 집행, 유산 정리 등의 업무를 대행함

〈표 IV-8〉 유언 관련 업무 추이

(단위: 건)

연도	유언서			유산정리
	보관	집행	총계	
1994	6,399	11,134	17,533	517
1995	6,302	12,233	18,535	659
1996	6,278	13,889	20,167	730
1997	6,224	15,551	21,775	815
1998	6,189	17,681	23,870	905
1999	6,721	20,268	26,989	1,093
2000	7,796	23,455	31,251	1,285
2001	10,557	26,628	37,185	1,295
2002	9,832	30,231	40,063	1,528
2003	9,407	34,246	43,653	2,119
2004	8,956	39,209	48,165	2,538
2005	9,436	44,272	52,708	2,862
2006	8,018	49,328	57,346	2,943
2007	7,574	54,070	61,644	2,735
2008	7,175	58,437	65,612	2,695
2009	6,142	62,769	68,911	2,699
2010	5,948	66,385	72,333	2,951
2011	5,820	70,155	75,975	3,147
2012	5,838	75,619	81,457	2,984
2013	5,824	82,624	88,448	3,475
2014	5,277	91,832	97,709	4,045
2015	5,916	108,707	108,623	4,784
2016	6,101	112,214	118,315	5,186
2017	6,398	121,968	128,366	5,931
2018	6,776	132,175	138,951	6,282
2019	7,399	142,007	149,406	6,558

주: 해당 자료는 매년 3월 말 기준으로 작성됨
 자료: 일본 신탁협회, 「信託の受託概況」(2013~2020년 각 3월 자료 이용), <https://www.shintaku-kyokai.or.jp/data/trust/>, 검색일자: 2020. 8. 19.

- 일본의 유언대용신탁 신규 수탁 추이를 보면 2012년 전년 대비 280배 증가한 이후, 꾸준히 신규 수탁이 이루어지고 있음(〈표 IV-11 참고〉)
- 일본에서는 유언신탁만큼 유언대용신탁의 이용이 활발한 것으로 보임

〈표 IV-9〉 유언대용신탁 신규 수탁 추이

(단위: 건)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44	64	17,926	45,559	41,048	29,115	14,637	10,431	10,171	11,691

주: 해당 자료는 매년 3월 말 기준으로 작성됨
 자료: 일본 신탁협회, 「信託の受託概況」(2013~2020년 각 3월 자료 이용), <https://www.shintaku-kyokai.or.jp/data/trust/>, 검색일자: 2020. 8. 19.

다. 신탁 과세 현황

- 일본신탁의 과세방식은 과세유형에 따라 수익자과세의 원칙과 신탁단계에서 과세되는 수탁자과세의 원칙으로 구분됨
 - 수익자과세의 원칙이 적용되는 신탁은 수익자 등 과세신탁과 집단투자신탁이 해당됨
 - 수탁자과세의 원칙이 적용되는 신탁은 법인과세신탁이 해당됨

1) 일반 과세신탁

- 일반 과세신탁의 범위, 납세의무자, 수익자 유형은 다음과 같음²⁶⁰⁾
 - 집단투자신탁, 법인과세신탁, 퇴직연금 등 신탁, 특정공익신탁 등은 범위에서 제외되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신탁이 속함
 - 도관이론이 적용되어 수익자가 납세의무자가 됨
 - 수익자의 유형은 다음과 같음

260) 일본 「신신탁법」 제182조

- 신탁존속 중 수익권이 있는 수익자
- 신탁의 종료 시 잔여재산에 대한 수익채권을 받는 수익자(잔여재산수익자)
- 신탁의 종료 시 잔여재산을 귀속받는 수익자(귀속권리자)

□ 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인도받은 신탁재산으로 구분하고, 그중 신탁재산에 포함된 자산·부채와 수익·비용은 수익자에게 귀속됨

- 귀속되는 수익·비용은 총액법을 적용해 계산함²⁶¹⁾
-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일정한 제한이 있음
 - 개인의 경우 신탁에 관한 소득의 손실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봄
 - 법인의 경우 신탁손실 중 신탁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등의 경우에는 신탁손실의 전부가 손금불산입됨

□ 신탁의 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부채의 전부를 수익자 각자가 신탁에서 부여받은 권리의 내용에 따라 갖게 되며, 각각 분배받은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님²⁶²⁾

2) 상속 및 증여세²⁶³⁾

□ 「상속세법」의 경우 신탁 효력 발생 시, 수익자 변경, 신탁의 종료 등에 대하여 과세관계를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한 신탁의 특례규정을 정함

- 신탁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에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당해 신탁의 수익자가 된 경우, 신탁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에 당해 신탁의 권리를 위탁자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간주함²⁶⁴⁾
- 수익자가 정해져 있는 신탁에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신탁의 수익자가 된 경우, 당해 신탁의 권리를 이전 신탁의 수익자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에 의해 취

261) 일본 「법인세법」 기본통달 14-4-3

262) 일본 「소득세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일본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263) 일본 「상속세법」 제9조의2

264) 일본 「상속세법」 제9조의2 제1항

득한 것으로 간주함²⁶⁵⁾

- 수익자가 정해져 있는 신탁에 당해 신탁의 일부 수익자가 존재하지 않게 되어 남은 수익자가 당해 신탁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새로이 이익을 받고서도 해당 이익에 대해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신탁의 일부 수익자가 존재하지 않게 된 시점에 이익을 받는 자는 당해 이익을 이전 신탁의 일부 수익자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간주함²⁶⁶⁾
- 신탁 종료 시 신탁의 잔여재산을 귀속받는 수익자가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탁 잔여재산을 이전 신탁수익자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간주함²⁶⁷⁾

- 수익자가 정해져 있지 않은 신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신탁수익자가 신탁 위탁자의 친족인 경우, 해당 신탁의 효력이 발생할 때 수탁자는 신탁의 위탁자로부터 신탁에 관한 권리를 증여 또는 유증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간주함²⁶⁸⁾

- 수익자가 정해져 있는 신탁에 대하여 기존의 신탁수익자가 존재하지 않게 되어 신탁 계약 항목 등에 의해 다음 수익자가 된 자가 이전 수익자 등의 친족인 때는 다음 수익자가 이전 수익자로부터 신탁에 관한 권리를 증여 또는 유증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간주됨²⁶⁹⁾
- 이 경우, 이전 수익자의 사망 등에 의해 부존재 상태가 된 경우에 해당됨

3)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

- 유언대용신탁 또는 수익자연속신탁의 경우 위탁자로부터 취득한 수익권을 유증 또

265) 일본 「상속세법」 제9조의2 제2항

266) 일본 「상속세법」 제9조의2 제3항

267) 일본 「상속세법」 제9조의2 제4항

268) 일본 「상속세법」 제9조의4 제1항

269) 일본 「상속세법」 제9조의4 제2항

는 증여에 의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함²⁷⁰⁾

- 수익자연속신탁의 경우, 수익자에게 수익권이 이전되면 해당 수익권은 위탁자 또는 직전 수익권자로부터 유증 또는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과세함

□ 유언대용신탁 또는 수익자연속신탁의 수익권 평가는 다음과 같이 함²⁷¹⁾

- 원본과 수익의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 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것을 당해 과세시기의 재산가액으로 평가함
 - 만약 해당 수익자가 원금과 수익의 일부를 취득한 경우, 법령에 의해 평가한 재산가액에 각각 동일한 수익권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평가함
- 원본과 수익의 수익자가 다른 경우, 다음과 같이 평가함
 - 소득 수입자는 당해 과세시기를 기준으로 장래에 발생할 수익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으로 평가함
 - 원본 수익자는 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신탁재산가액에서 앞서 계산된 소득수익권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평가함

□ 수익자연속신탁의 평가에 관한 특례가 있으며, 다음과 같음²⁷²⁾

- 수익자연속신탁의 수익을 받을 기간의 제한²⁷³⁾ 등 제약이 있더라도 수익권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해당 제약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²⁷⁴⁾
- 원본 또는 수익에 대한 수익권의 권리가 분리되는 경우, 신탁재산의 총가액은 소득수익권으로 평가됨²⁷⁵⁾
 - 법인이 소득수익권을 갖는 경우,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기에²⁷⁶⁾ 원본수익권의 가액이 '0'으로 평가되지 않음²⁷⁷⁾

270) 일본 「상속세법」 제9조의2 제1항; 제4항

271) 일본 「재산평가기본통달」 202

272) 税理士法人 UAP・株式会社 UAP信託, 『詳解 信託の税務』, 中央経済社, 2009, pp. 96~97.

273) 일본에서는 수익자 연속 가능 기간을 30년으로 한정하고 있음

274) 일본 「상속세법」 제9조의3 제1항

275) 일본 「상속세기본통달」 9의3-1

276) 일본 「상속세법」 제9조의3 제1항

- 또한 수익권의 수익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원본수익권의 가액은 '0'으로 평가되지 않음²⁷⁸⁾

- 원본수익권이 '0'으로 평가되는 경우, 신탁의 설정기간 중에는 상증세가 과세되지 않고 신탁 종료 후 원본수익권자가 잔여재산을 취득하는 시점에 상증세가 과세됨²⁷⁹⁾

4) 세대생략이전과세

□ 세대생략이전과세에서 제1수익자는 해당 신탁의 효력이 발생할 시 신탁에 관한 권리를 위탁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함²⁸⁰⁾

- 단 위탁자의 사망으로 인해 신탁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유증에 의한 취득으로 간주함

□ 세대생략이전과세에서 제2순위 및 그 이상의 수익자는 해당 신탁의 권리를 선순위 수익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함²⁸¹⁾

- 단 선순위 수익자의 사망으로 인해 신탁의 권리를 받은 경우, 유증으로 취득한 것으로 간주함

라. 유류분제도

□ 일본 유류분제도는 일본 「민법」에 속하며, 일본 「민법」은 부부재산제에 관하여 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어, 채권적 재산분할청구권을 부여하지만 사망 시에는 전적으로 배우자 상속에 의해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277) 일본 「상속세기본통달」 9의3-2

278) 일본 「상속세기본통달」 9의3-1

279) 일본 「상속세법」 제9조의2 제4항

280) 일본 「상속세법」 제9조의2 제1항

281) 일본 「상속세법」 제9조의2 제2항

- 현행 유류분(遺留分) 권리자는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은 포함되지만 형제자매는 제외됨
- 유류분 비율은 다음과 같음
 - 직계존속만 있는 경우 전체 상속재산의 1/3²⁸²⁾
 -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있는 경우 1/2²⁸³⁾
 - 나머지는 자유분임
- 유언의 자유를 인정하고 상속분의 지정과 포괄 유증이 모두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⁸⁴⁾

282) 일본 「민법」 제1028조

283) 일본 「민법」 제900조

284) 일본 「민법」 제902조; 제964조

V. 국제비교 및 시사점

1. 국제비교

가. 주요국의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 과세

- 미국과 일본은 공통적으로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를 적용함
 - 위탁자 생존 중에 발생하는 신탁수익은 위탁자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함
 - 신탁수익은 신탁재산의 유형에 따라 과세함
 - 위탁자 사망 후 해당 신탁과 관련한 수익권 또는 원본은 위탁자로부터 수익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유산세) 및 증여세를 과세함

- 영국은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를 적용함
 - 위탁자 생존 중 신탁을 설정할 시 위탁자에게 납세의 의무가 있으며, 신탁 설정 후 7년이 경과하면 수탁자에게 상속세를 부과함
 - 위탁자 사망 후 신탁과 관련한 수익권은 수익자에게 상속세를 부과하고 신탁의 원본은 수탁자에게 처분 권한이 있으므로 수탁자에게 납세의 의무를 부과함
 - 수익자연속과 관련된 과도기적 연속수익은 2008년 10월 5일 이전에는 상속세를 지불하지 않고 수익권 이전을 할 수 있었으나, 이후부터 수익소유권 이전 시 기존의 신탁 거래로 보아 20% 상속세로 과세함

〈표 V-1〉 유언대용신탁 과세제도 비교

구분		한국	영국	미국	일본
과세유형		유산과세형 (상속세) 취득과세형 (증여세)	취득과세형 (상속세)	유산과세형 (유산세 및 증여세)	취득과세형 (상속세 및 증여세)
납세 의무자	위탁자 생존	수익자	위탁자 또는 수탁자	위탁자	위탁자
	위탁자 사망	수익자 (상속세)	수탁자 (상속세)	수익자 (상속세 및 증여세)	수익자 (상속세 및 증여세)

자료: 저자가 본고를 바탕으로 정리함

나. 주요국의 수익자연속신탁을 통한 세대생략이전과세제도

- 미국과 일본은 공통적으로 신탁원본과 수익으로 신탁이익을 분리하여 이전하고 있으나, 부의 승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차이를 지님
 - 부의 승계범위와 방식에서 다음과 같이 차이가 남
 - 미국은 부의 승계범위에 상속과 증여 모두 포함되고, 승계방식으로 직접승계방식과 간접승계방식을 모두 채택하고 있음
 - 일본은 부의 승계범위에 상속만 허용하고, 승계방식으로 직접승계방식만을 허용하고 있음
 - 영국은 부의 승계범위에 상속을 허용하며, 직접승계방식을 허용함
- 영국은 과도기적 연속수익을 이용하여 수익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으며, 수익소유권을 세대를 생략하여 이전할 경우에도 신탁의 거래로 보아 기존의 신탁과 같이 상속세를 부과함
 - 영국은 신탁의 유형에 따라 과세되며 수익자연속에 관한 신탁 유형으로 권리소유신탁이 있으나 현재는 적용하지 않음

- 수익자가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자본이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연속수익을 취득한 자가 상속세를 부담함
- 2008년 10월 5일 이전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아 상속세를 이연하는 효과가 있었으나, 이후부터 과도기적 연속수익의 방법을 통해 수익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음

□ 무상이전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보면 다음과 같이 차이가 남

- 영국은 연속수익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며,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음
- 미국은 유산세는 상속재산관리인 또는 피상속인이 납세의무자가 되고, 증여세는 증여자가 납세의무자가 됨
 - 재산을 이전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유산과세형을 채택하고 있음
- 일본은 상속인과 수증자가 납세의무자가 됨
 -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을 승계받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됨

□ 주요국 각국의 수익자연속신탁을 통한 세대생략이전과세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미국은 세대생략이전과세에서 신탁이 세대생략 수익자, 재산을 이전하는 자, 세대생략 비수익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여 신탁 관련 권리의 공백상황을 방지하는 등 신탁에 실체를 부여하고 있음
- 일본은 세대생략 수익자의 범위를 혈족 직계비속과 1촌의 혈족 이외의 자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세대생략 수익자에게 20%의 할증률을 적용하고 있음
- 일본은 수익자연속신탁을 통해 신탁원본과 수익으로 신탁이익을 분리이전하고 있으며, 일정한 기간 제한에 따른 후순위 수익자의 승계를 허용하고 있음
- 영국은 세대생략이전 시에도 기존의 권리소유신탁 거래로 보아 상속세 20%가 부과됨

〈표 V-2〉 수익자연속신탁을 통한 세대생략이전과세 비교

구분	한국	영국 ¹⁾	미국	일본
과세유형	유산과세형 (상속세) 취득과세형 (증여세)	취득과세형 (상속세)	유산과세형 (상속세 및 증여세)	취득과세형 (상속세 및 증여세)
상속세 납세의무자	상속인 또는 수유자	수증자	상속재산관리인 또는 피상속인	상속인 또는 수유자
증여세 납세의무자	수증자	-	증여자	수증자
재산승계방식	직접승계방식	직접승계방식	직간접 승계방식	직접승계방식
신탁의 실제성 부여	허용 X	허용 O	허용 O	허용 X
신탁이익의 분리이전	허용 X (상속세 및 증여세)	허용 O (상속세)	허용 O (유산세 및 증여세)	허용 O (상속세)
수익자연속신탁 을 통한 세대생략이전	허용 O (상속세)	허용 X (상속세)	허용 O (상속세 및 증여세)	허용 O (상속세)
연속수익의 이전원인	사망만 허용	사망	사망, 권리 해제, 기간 경과 등	사망, 기간 경과

주: 1) 영국은 2008년 이후의 신탁에는 세대생략이전과세제도가 적용되지 않음
자료: 저자가 본고를 바탕으로 정리함

다. 유류분제도

- 일본과 영국은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유류분제도를 두고 있으나, 미국은 유류분제도를 두지 않는 대신 다른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영국은 유류분을 허용하고 있으며, 상속 개시 전 6년 이내의 증여에 대하여 반환 요구를 할 수 있음
 - 「상속법」상 유류분의 권리자는 배우자 또는 민사동반자, 전 배우자 피상속인의 자녀 등임
 - 유류분에 대하여 ‘합리적인 금액’ 이내에서 청구 가능하나, 지급범위는 부양의

-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그 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 법원이 재량을 갖고 있음
- 일본 유류분제도 내 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 비율은 다음과 같음
 - 유류분권리자는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은 포함되지만 형제자매는 제외됨
 - 유류분비율은 직계존속만 생존 시 전체 상속재산의 1/3, 배우자 또는 자녀 생존 시 전체 상속재산의 1/2, 나머지는 자유분임
 - 미국의 유류분제도 대체 제도들 중 상속형 신탁과 연관이 있는 제도는 강제지분제도와 선택지분제도이며, 두 제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강제지분제도는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재산 중 일부를 생존배우자에게 강제적으로 유보하는 형태를 보이며, 해당 특징은 유류분제도와 유사성을 가짐
 - 선택지분제도는 배우자가 사망함으로써 상속의 효력이 발생할 때 부부의 총재산²⁸⁵⁾에 선택지분율²⁸⁶⁾을 곱한 금액의 1/2이 생존배우자의 선택지분이 되도록 하는 제도임

〈표 V-3〉 유류분제도 비교

구분	한국	영국	미국 ¹⁾	일본
유류분 권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계비속 • 배우자 • 직계존속 • 형제자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 민사동반자 • 전 배우자 피상속인의 자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존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계비속 • 배우자 • 직계존속 (형제자매는 제외)
유류분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계비속 및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법정상속분의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리적인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재산에 선택지분율을 곱한 금액의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계존속: 상속재산의 1/3 • 배우자 및 자녀: 상속재산의 1/2 나머지는 자유임

주: 1) 미국은 유류분제도에 대한 대체제도로 강제지분제도를 시행 중임
 자료: 저자가 본고를 바탕으로 정리함

285) 총재산에는 생존배우자 소유재산, 피상속인이 생존배우자 등에게 생전 처분한 재산, 생존배우자가 제3자에게 생전 처분한 재산을 모두 포함함

286) 혼인존속 기간에 따라 비율이 차등됨

라. 신탁 존속기간

- 주요국의 신탁 존속기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영국은 신탁 설정 후 21년 이내까지 신탁 존속이 가능함
 - 미국은 위탁자 사망 후 21년 이내까지 신탁 존속이 가능함
 - 일본은 신탁 설정 후 30년 이내까지 신탁 존속이 가능함

2. 시사점

- 현재 우리나라의 신탁 관련 법 및 과세제도를 주요국과 비교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살펴봄
 - 주요국과 비교 결과 신탁에 대한 전반적인 법제도 규정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 더불어 법규정의 미비로 인해 적절히 적용 가능한 과세제도 역시 부족한 것으로 사료됨
 - 이에 다음과 같은 규정의 개선이 필요해 보임

가. 상속형 신탁 관련 법 및 과세제도 규정 명확화 필요

- 상속형 신탁의 경우, 위탁자 생존과 사후 각각 미칠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한 규정이 필요함
 - 위탁자 생존 중 신탁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신탁세제의 과세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위탁자가 신탁에 미치는 영향력 또는 지배력에 대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미국과 일본은 위탁자 생존 중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실질적인 증여나 상속이 발생하기 전까지 위탁자의 재산으로 보아 위탁자에게 과세함으로써 편법 증여 시도를 차단할 수 있음

- 위탁자가 신탁을 설정할 시 본인 사후 신탁원본과 수익권을 각각 다른 사람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대한 세법상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미국과 일본의 경우 위탁자 사망 후 신탁원본과 수익권에 대하여 위탁자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수익자에게 상속세(유산세) 및 증여세를 과세함

-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에 존재하는 미래이익(future interest)에 대한 규정이 필요함
 - 사법상 소유권과 미래이익의 개념이 충돌하므로 사법상 개념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미래이익에 대한 과세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미국에서는 미래이익에 대해 반환 또는 복귀 가능한 자산, 잔여권, 유산 등과 같은 것을 포함시켜 미래이익을 규정하고 있음²⁸⁷⁾

- 수익자연속신탁에서 위탁자의 배우자(선순위 수익자)가 위탁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신탁재산의 수익권이 자녀(후순위 수익자)에게 순차에 의해 이전될 때 과세 방법이 문제가 됨²⁸⁸⁾
 - 배우자의 상속재산에 신탁재산의 수입수익권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법령상에서 분명하지 않아 해석에 따라 달라짐

- 수익자연속신탁에서 위탁자가 사망하여 신탁원본 및 수익권을 가지고 있는 선순위 수익자의 사망 후 순차적으로 신탁원본 및 수익권이 후순위 수익자에게 귀속된 이

287) Treg. Reg. §25.2503-3(a)

288) 이와 관련해 긍정설과 부정설이 존재함. 긍정설에 따르면 배우자의 수입수익권을 배우자의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지 않음. 부정설에 따르면 선순위 수익자인 배우자의 수입수익권은 위탁자에 의해 주어진 권리가기에 상속으로 포괄이전되는 재산으로 보기 어려움. 자녀(후순위 수익자)의 입장에서는 배우자가 사망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전받았으며, 해당 수입수익권은 「상증세법」 제9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기에 배우자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음. 즉 자녀(후순위 수입자)는 배우자(선순위 수익자)의 사망으로 인해 이전받는 수입수익권은 이미 배우자 측에서 상속세를 납세하고 얻은 이익권을 이제 향유하는 것이기에, 배우자가 사망했다고 하여 다시 상속세를 납부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 입장임(「상증세법」 제9조 제2항; 「상증세법 시행령」 제5조).

후 원분을 처분한 경우, 처분 전까지 수령한 원본 및 수입수익에 대한 과세문제가 생길 수 있음

- 해당 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을 얼마로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음

나. 신탁 존속기간 설정 및 관련 규정 필요

- 우리나라의 「신탁법」 및 신탁 과세세제에 신탁 존속기간에 제한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에는 현재 신탁 존속기간에 제한이 없어 신탁재산을 장기적으로 신탁을 통해 구속하고, 위탁자로 하여금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을 기간 제한 없이 행사 가능함
 - 주요국에서도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탁 존속기간을 설정하여 위탁자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있음
- 신탁 존속기간에 제한을 두게 된다면 존속기간 종료로 인한 신탁 종료 후의 법적 인 후속 법안 마련이 필요함
 - 해당 신탁 유지를 원할 경우, 신탁을 새로 설정하거나 이전 신탁을 승계할 것인지 등과 같은 경우에 따라 법적·세법적 규정이 필요함

다. 유류분제도와 관련한 「신탁법」 수정 필요

-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와 법정상속인의 이익을 조정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으로서 상속 개시 후에 유류분 권리자가 이를 포기할 수 있으나,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제할 수 없음²⁸⁹⁾
 - 계약 및 유언에 의해 신탁이 설정되기에 피상속인의 재산은 수익권의 형태로 수

289) 김병일·김종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수익자연속신탁에 관한 과세방안」, 『조세연구』, 제13권 제3집, 한국조세연구포럼, 2013, p. 236.

탁자에서 제3자에게 귀속됨으로써 법률상 상속인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이익이 신탁 설정방식에 의해서 침해될 수 있음

- 「민법」 제1115조에서는 유류분이 부족한 경우 한도 내에서 재산의 반환청구를 인정하고 있기에 유류분을 침해하는 신탁도 유류분 권리자가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는 때도 당해 신탁이 유효하고, 수탁자 내지 수익자는 신탁상의 재산적 이익을 보유할 수 있게 됨

- 수익자연속신탁의 경우 수대에 걸쳐 수익자를 결정할 수 있기에 유류분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게 됨
 - 만약 위탁자에게 두 명의 자녀가 있고 해당 자녀가 각각 자녀를 둘씩 두게 된다면, 이 경우 유류분의 권리주장자가 배수로 증가하게 됨

- 신탁에 의한 유류분 침해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신탁재산을 배제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됨
 - 유류분산정의 기초인 「민법」 제1113조 제1항에는 신탁재산을 포함하지 않음 - 위탁자의 고유재산과 신탁재산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임
 - 현행 「신탁법」의 신탁재산의 범위에는 적극재산을 인정하며 피상속인의 소극재산은 유류분 산정 기초가액에서 배제하고 있음²⁹⁰⁾

290) 「민법」 제1114조와 관련 있음

참고문헌

- 김병두, 「개정신탁법상의 유언대용신탁에 관한 소고」, 『민사법학』, 제64호, 한국민사법학회, 2013, pp. 3~49.
- 김병일·김종해, 「영국의 신탁과세제도와 그 시사점」, 『세무학연구』, 제28권 제3호, 한국세무학회, 2011, pp. 141~173.
- _____,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수익자연속신탁에 관한 과세방안」, 『조세연구』, 제13권 제3집, 한국조세연구포럼, 2013, pp. 255~262.
- 김종해·박창덕·김병일, 「수익자연속신탁에 따른 세대생략이전세제에 관한 연구」, 『조세연구』, 제19권 제3집, 한국조세연구포럼, 2019, pp. 83~115.
- 김재진·홍용식, 『신탁 과세제도의 합리화 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998.
- 자본시장연구원·금융연구원·보험연구원, 『국내 신탁업 현황 분석 및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필요과제 도출』, 금융위원회, 2017. 7.
- 명순구·오영길 역, 『현대미국신탁법』, 세창출판사, 2005.
- 법무부, 『신탁법 개정안 해설』, 법무부, 2010.
- _____, 『신탁법 해설』, 법무부, 2012.
- 손영철, 「신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연구」, 『법학논총』, 제20권 제2호,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pp. 223~255.
- 손영철·서종근, 『금융상품과 세법』, 삼일인포마인, 2018.
- 손영철·이한우, 「신탁이익의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문제」, 『조세와 법』, 제12권 제2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pp. 1~43.
- 예상국, 「세법상 신탁과세이론 적용에 관한 연구-법인세법 제5조 제1항과 소득세법 제2조의 제6항을 중심으로」, 『법학논문집』, 제40집 제3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 2016, pp. 325~364.
- 윤진수, 『민법논고 VII』, 박영사, 2015.
- 이중교, 「신탁 관련 소득과세의 문제점 및 개편방안」, 『세무와 회계 연구』, 제9권 제3호,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2020. pp. 93~136.
- 이동진, 『유류분법의 입법론적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9.
- 임채웅, 「유언신탁 및 유언대용신탁의 연구」, 『인권과 정의』, 제397권, 대한변호사협회, 2009, pp. 124~143.
- 정소민, 「신탁을 통한 재산승계와 유류분반환청구권」, 『한양법학』, 제28권 제2호, 한양법학회, 2017, pp. 217~244.
- _____, 「신탁을 통한 재산승계의 이론과 실무」, 『법학연구』, 제60호,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pp. 77~104.
- 정준섭·노혁준, 『신탁법의 쟁점(제2권)』, 소화, 2015.
- 최동식, 『신탁법』, 법문사, 2006.
- 최수정, 『일본신신탁법』, 진원사, 2007.
- 한소혜,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유류분 제도의 개선방안-영국, 미국 사례로부터의 시사점을 포함하여」, 『외법논집』, 제43권 제2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pp. 49~70.
- 金子宏, 『租税法』, 弘文堂, 2017.
- 税理士法人 UAP・株式会社 UAP信託, 『詳解 信託の税務』, 中央経済社, 2009.
- 川上尚貴 編著, 『圖説日本の税制』, 財経詳報社, 2008.
- James M. Peaslee・David Z. Nirenberg, *Federal Income Taxation of Securitization Transactions*, Third Edition, Frank J. Fabozzi Associates, 2001.
- John H. Langbein., *The Secret Life of The Trust : The Trust as an Instrument of Commerce*, 107 Yale L. J., 1997.
- William H. Hoffman, Jr., William A. Laabe, James E. Smith, David M., *Maloney*,

South-Western Federal Taxation: Corporations, Partnership, Estates & Trusts, 2020 Edition, SOUTH-WESTERN, 2020.

국세청 용어사전, <http://txsi.hometax.go.kr/docs/customer/dictionary/worldList.jsp>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미국 국세청, <https://www.irs.gov/>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 <https://www.fdic.gov/>

영국 법령정보, <http://www.legislation.gov.uk/>

영국 정부, <https://www.gov.uk/>

영국 통계청, <https://www.ons.gov.uk/>

일본 국세청, <https://www.nta.go.jp>

일본 신탁협회, <https://www.shintaku-kyokai.or.jp/>

세법연구 20-04
신택에 대한 과세제도
- 상속형 신택을 중심으로 -

발 행 2020년 10월 31일
저 자 권성오·강문정·이화령
발행인 김유찬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014-24호
조 판 및 쇄 거목정보산업(주)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ISBN 979-11-6655-004-1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